대한민국정부



제16679호 2008. 1. 29. (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0569호(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3 【부 령] ○환경부령제274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8 【ユ A)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5호(청소년유해매채물 결정)……………… 116 ○재정경제부고시제2008-4호(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130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130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3호(○산업자워부고시제2008-13호(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 165 ○산업자워부고시제2008-14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 166 ○환경부고시제2008-12호(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 ………… 169 ○환경부고시제2008-13호(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개정)……………… 178 ○환경부고시제2008-16호(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180 ○산업자원부고시제2008-8호(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180 ○환경부고시제2008-17호(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 181 ○산업자원부고시제2008-7호(전기 · 전자제품의 재질 · 구조개선지침) …………… 181 (이면 계속) 회 람

^{발행}행정자치부

. 편집 ☎ 2100-3310, 2100-3312 보급 ☎ 727-0642~46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 8 g/㎡

○환경부고시제2008-18호(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185
○관세청고시제2008-7호(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3호(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지정	188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35호·제2008-3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등) ············	19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호(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중정정)…	192
【공 고】	
	193
○문화관광부공고제2008-8호 <mark>(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mark>) 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94
○정보통신부공고제2008-5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입부개정령〈안〉입법예고	195
○해양경찰청공고제208-8호(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	19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호(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1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호(도로사용개시)	197
○서울체신청공고제2008-7호(행정처분)	197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0호(신제품〈NEP〉인정 및 취소) ···································	203
【지 방 자 치 단 체 】	
○경기도고시제2008-19호(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대구광역시공고제2008-46호(방지시설업 등록)	207
○경상남도공고제2008-74호(방지시설업 등록)	207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69호(수질방지시설업 등록)	208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08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엔

2008년 1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569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공사업법시행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공사업법시행정"을 "진기공사업법 시행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1.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다만,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등급의 번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자본금란을 다음과 같이 힌다.

자 본 급 O2억원 이상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반 구분 공사의 종류 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 배진설비공사 (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선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발 전 · 송 전	발전설비공사	C발전소(원자력발진소, 화력발전소, 공력발전소, 수력 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일발전소, 내연발진소, 열병 합발전소, 태양광발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 기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배 선 비 설 공 사 : .	송진설비공사	○가공송전설비공사: 가공송전실비공사에 무대되는 철 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시물설치 및 철탑도 장을 포함한다), 가선공사(급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계소의 보조실비공사, 보호선·보호망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 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 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 사를 포함한다) ○물밀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변진설비공사	○번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닉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모선설비공사: 모선가선(급구류, 및 애자상치를 포함 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보호재어설비설치공사: 보호·제어반 및 세어케이블 의 설치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에시
	배진설비공사	O가공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
ľ		O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진
		□ 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 □ 관로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개
		전포클릭하시, 전립기 ㅎ 전기기기글시하시, 전급기 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진력케이블설치공사
		O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	등의 터널 안 전신로공사
신 업	산업시설물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
시설물	전기실비공사	발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치리장, 폐기물처리시
		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건축물		O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
및		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구조물	긴축물의	○전원설비공사: 수·번전설비공사(큐비클설치공사를 포
의 전	전기설비공사	함한다), 예비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기, 축선지, 충
기설비		전장치, 무성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
공사		사를 말한다) 및 보호ㆍ제어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판(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		○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
		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애스
		컬레이터, 전동념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
		베이어, 슈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
		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시지·낙뢰설비, 잡음·전자
		파(EMI, EMC, EMS 등을 발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륜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
	· ·		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O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O지능형주택자동화시스템 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
	'		어 및 감시하는 공사
			O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지보설비, 주차관제전
		i	기설비
			O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O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전기설비공사	위한 전기공사
			 ○동결방지공사: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
п			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네은짜인, 큐빅보드, 광고표
	1 .		! 지능(전광핀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
			 어설비의 공사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시
			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五星	도로진기설비공사	○가로등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더
			· : 널등의 설치공사
	강항		○터널설비공사: 터닐조명설비공사와 터닐방재에 필요
			한 전기설비공사
	항 만	į	O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진기설비공사
	전 기	공항전기실비공사	C '항공법」 제2소제6호에서 장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실 비		전기설비공사
	공 사		O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실비공사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O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전 기	전기철도설비공사	O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실
철 도		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실치공사, 선
띶	!	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실비공사
철 도	철도신호설비공사	O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
신호		(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
공 사		차집중 제어장치, 일차행신 안내표시가 및 각종 제
		이기설치공사
기타	전기설비의	〇진기기계·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
전 기	설치를 위한 공사	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설비		O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공 사		O주면전실 및 부반전실의 보호·제어를 위한 설비공
		사
l		O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인 송진선 등의 계축 및 보
1	j	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O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소명을 위한 설비공사
	!	C 전력설비의 내진·방재(소유·진동·화재)·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	O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O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세3항 관련)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성력에 의한 선기공사기술자
투급	O기술사 또는 기능상의	
인시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자		

E 7	그리지스라기키	원과 거리세 시원 자리보기되스의
둥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고 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전기공사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	
기 술 자	무를 수행한 자	
	O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8년 이상 전기공	
	사업무를 수행한 자	
	O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선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O기사의 자격을·취득한	
전기공사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	
기술자	무를 수행한 자	
	O산입기사의 자격을 취득	
	· 한 후 5년 이상 전기공	
	사업무를 수행한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 마이트웨어 시 취임원이 시원이 취득함
초급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 ¬
전기공사		자
기 술 자		O전기관린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진기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
		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
		북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1	1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İ		○전기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한 후 6년 이상 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솔
1	!	엄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
	İ	한 자

비고

- 1. 위 표의 국가기술자직자는 「국가기술자직법」의 기술자직종목 중 아래의 가 술자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정력인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판이 정하여 고시 한다.
 -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선기설비, 철도신호, 선기철도, 산업계축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나, 기능장: 전기
 -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원자력
 -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 마. 기능사: 전기, 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 2. 위 표의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위 표에서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기공사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4제2항 관련)

대 상 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및 등급의 변경 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기술능력의 향상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력·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등급 인정을 위한 양성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시공관리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시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부

●환경부령 제27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rm ll \cdot SNA$ 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샘물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회서
- 2 수집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3. 워상복구계획서
-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절한 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 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②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대표자나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하다.
 -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화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 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 나. 제조공정 설명서
 -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
 -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 4.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 나. 보관시설명세서
 -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제조공장의 소재지
- 2. 제조품목
-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 다
- 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제조공장의 소재지
-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증
-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증
-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 4.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 제조

업 ·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 **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화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입 관련 서류
 -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만 해당한다)
 -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묵인지륵 증명하는 서류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 기 제조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다
 -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먹는샘물 제조업자 과정
 -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 4. 먹는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의 기본방향
 -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 기간 및 인원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 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화은햇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화인서
-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 확인서
- 제22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판매실적 등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실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서로 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화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20일
-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말일
- 제28조(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 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면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 28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분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영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켜야 한다.
- 제29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하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 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 2. 수출계약서 사본
- **제31조**(광고의 제한)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는 제외한다)는 할 수 없다.
-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이나 법 제 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 라. "최고"· "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
 -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2. 정수기의 경우
 -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 나. "최고"· "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
 -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 · 광고
 -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 3.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
-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 등을 수거하 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 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 1. 국립환경과학원
 -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3.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 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만을 할 수 있다.
 - 1. 시 · 군 · 구의 보건소

- 2. 시 · 군 · 구의 정수관리업무나 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 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①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 3 검사기관의 대표자
-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화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2 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정수기의 구조 · 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 · 평가
 -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수성능 분야: 2명 이상
 - 2. 구조·재질 분야: 2명 이상
 -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 2명 이상
 - 4.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유영하여야 한다.
 -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 나. 피팅·튜빙·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 다. 저수조청소용구 · 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 · 수리기구
- 제38조(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8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주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가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1.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기. 고기 영국의 고기	0 Н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부존량 및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
산출상태	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
	(2) 우물 및 샘 현황
	(3) 수원 및 하천 현황
	(4) 잠재오염원
	(5)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6)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
	나)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
	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
	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
	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
	도의 축척은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
	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유동(流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
	· 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2)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3)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
	(4)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5)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
	다)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부존 및 산출상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1)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
	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
	· 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
	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
	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전기비저항탐사 :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
	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라)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와 광역관측
	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시험정 및 광역관측정
	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정 1조 :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2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1개 이상, 하류
	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하되, 지질 및 지질구조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양
	수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2) 광역관측정 1조 : 광역관측정은 양수정을 기점으로 상류구간에 1개 이
	상, 하류구간에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양수정과 광역관측정 간의 거리
	는 (1)의 관측정 중에서 양수정에서 가장 먼 관측정과의 거리보다 길어
	야 한다.
	마)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
	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2)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
	바) 가)부터 마)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1) 양수시험
	(가)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또는 변동양수
	율 조건에서 양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降下)를 측정하고, 모든 양수정에 대한 동시 양수
	시험도 실시하여 측정한다.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ㆍ지표수문ㆍ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
	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가장 최근의 갈수연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시험기간은 5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
	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
	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
	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
	(마)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2) 수위회복시험
	(가)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나)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
	험 결과와 비교한다.
	(3) 순간수위변화시험
	(가) 관측정에 일정 부피의 순간주입 또는 추출에 의한 수위변화와 그
	후 시간에 따른 수위강하 또는 수위회복을 측정한다.
	(나) 시간-수위변화 자료를 통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
	등을 결정한다.
2) 적정채수량·영향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
범위 및 포획구간	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
	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
	하수 모델링 또는 1개월 이상 장기양수시험 결과에 따른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나) 가)의 포획구간 안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조 사 핫 목 사 밧 주 번 3) 화경지집한적 피해 가)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한으로써 주변에 밤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갓 하 · 지반침하 · 사면안정파괴 ·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 · 부석하여 제시하다 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존 자료부석 및 지질구조 조사 (2)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軟弱帶) 파악 (3) 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 · 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4) 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5) 중금속 오염도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 공학적 분석 4)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워(지표수·샘 등)의 수집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워수의 수집안 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 사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 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샘물의 원수로 사용 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 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 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할 때 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지하수수질기 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샘물용, 상수도 등 생활용수용, 농업용 및 공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 (4) 원수의 수집분석 결과 수집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비고: 법률 제5394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1)의 조사방법란 가)의 (5), 같은 란 라)의 광역관측정에 관한 사항, 같은 란 바)의 (1)(라)의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규명에 관한 사항, 3)의 조사방법란 중 나)의 (5) 및 4)의 조사방법란 중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기준

- 1) 물 수지부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 2)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 3) 원수수질의 적정성

다 조사서의 작성

- 1)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3)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2.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가.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 1) 허가받은 1일 채수한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 등의 피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하다.
- 2)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3)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4)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 5)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 6)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 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 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 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7)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하다.
- 8)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비고: 법률 제5394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

여는 감시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다.
- 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가목 1)부터 5)까지의 관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측정시간 간격

1. 양수정(시험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0.1분 초과~1분 이하	0.1분 간격	1		
1분 초과~10분 이하	1분 간격	2		
10분 초과~100분 이하	5분 간격	2		
100분 초과~1000분 이하	50분~1시간 간격	2		
1000분 초과	5~10시간 간격	2		

2. 관측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1분 초과~10분 이하	1분 간격	2
10분 초과~100분 이하	5분 간격	2
100분 초과~1000분 이하	이하 50분~1시간 간격	
1000분 초과	5~10시간 간격	2

[별표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지질 및 지반기술사 및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사무실	
이상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본다)	
이상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	
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	
	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비つ

- 1.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 1.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 가. 취수정의 설치
 -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 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250mm 의 내부 케이싱을 설치한다.
 - (2) 이때 최초 지층 굴착 구경은 최초 그라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케이싱 구경 보다 최소한 100mm 이상 크게 굴착하여야 한다.
 - 나) 그라우팅 실시
 - (1) 상부구간 착정 종료 후 상부 오염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케이싱과 착정경 사이의 공간 (Annular space)에 착정공저부에서부터 역순환식 압력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 (2) 이때 그라우팅은 주입제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하며 그라우팅 주입제는 체적상으로 3퍼센트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급결제(急結製)를 사용할 수 있다.
 - (3) 그라우팅 실시 후 시멘트가 고결(固結)될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할 수 없다.
 - 다) 취수정 형성
 - (1) 그라우팅이 완전 고결된 후 적정구경(150~250mm)으로 하부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공 내 TV-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TV-카메라 검층결과는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 (3) 공내검층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중 모터펌프 설치와 공내 수위관측공 설치가 가능한 적 정규격의 우물자재(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수중 모터펌프 보호에 충분한 심도까지 설치 한 후 공안의 세척을 실시한다.
 - 2) 채수 및 계량시설
 - 가) 양수 모터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수정 보호시설

- 가) 취수정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양수장(Pump-house)에 자물쇠가 달린 보호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다
- 나) 취수정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외부 케이싱의 상반부는 양수장의 바닥면 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취수정 자재 등

취수공을 굴착한 후에 공내에 설치할 정호자재는 모두 KS 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5) 감시정의 설치와 관리

가) 감시정의 위치

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정의 위치·설계구조와 취수정의 상하류 경사구간이 결정되면 그 상류경사구간에 2개공의 상류경사 감시정과 그 하류경사구간에 최소 1개공 이상의 하류경 사 감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시정의 설치

- (1) 상류경사 감시정
 -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주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상류에 설치한다.
 - (나) 상류경사 감시정의 굴착심도는 취수정의 심도와 동일하거나 최소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상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하류경사 감시정
 -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이나 그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에 설치한다.
 - (나) 하류경사 감시정의 굴착심도는 취수정 심도와 동일하거나 최소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하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다) 연속자동계측기 설치 및 관리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전기전도도·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1) 표준제조공정

표준제조공정(다만, 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기본기계 · 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균·소독시설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처리수 저장조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Clean Room)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비·자재

- (1) 각종 설비는 모두 KS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2) 먹는샘물 생산 배관자재는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전 설비 및 배관은 CIP(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 (1)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회수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원료·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샘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작업장 중 출입구·원수처리장·제조가공장·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비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실 및 장비

1) 검사실

- 가)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검사장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의 장비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 나) 광전분광광도계
 - 다)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발광광도계(ICP)
 - 라) 퍼지트랩장치
 - 마) 수도이온농도측정기(pH메터)
 - 바) 콜로니 카운터
 - 사) 클린벤치
 - 아) 정제수 제조장치
 - 자) 고압멸균기
 - 차) 저울
 - 카) 건조기
 - 타) 부란기
 - 파) 진탕수욕조
 - 하) 가열판
 - 거) 탁도계
 - 너) 교반기
 - 더) 피펫 세척기
 - 러) 수욕조
 - 머) 잔료염소 비색계
 - 버) 흉후드
 - 서)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 2.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제조공정상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집제

원료저장탱크 · 혼합기 · 반응기 · 분쇄기(고체만 해당한다) · 여과기

2) 살균 · 소독제

가) 고도표백분 : 혼합기·타정기·반응기·석회유탱크·석회유필터·원심분리기·건조기·집 진기·부리탑

- 나) 액화염소: 전해조 · 염소가스부리기 · 건조탑 · 염소가스압축기 · 염소가스냉동기
- 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워료저장탱크 · 반응기 · 냉동기
- 라) 이산화염소 : 원료저장탱크 · 이산화염소발생장치 · 반응기
- 마) 오존: 오존발생장치
- 3) 방청제

원료저장탱크 · 혼합기 · 용광로 · 성형기 · 건조시설

- 4) 그 밖의 제제
 - 가) 수산화칼슘(소석회): 분쇄기·혼합기·반응기·분급기
 - 나) 활성탄: 탄화로·활성로·분쇄기·혼합기·선별기·포장기·집진기
 - 다) 황산동: 반응기 · 농축기 · 여과기 · 냉각기 · 탈수기 · 포장기
 - 라) 수산화나트륨: 전해조·농축조
 - 마) 제오라이트: 분쇄기 · 건조기 · 입도분리기 · 약품처리조 · 세척조
 - 바) 일라이트: 분쇄기 · 건조기 · 송풍기 · 분급기 · 포장기
 - 사) 황산: 워료저장탱크 · 연소로 · 촉매탑 · 황산흡수탑 · 저장조 · 중화처리조
 - 아) 안정화이산화염소 : 워료저장탱크 · 반응기
 - 자) 이산화탄소:원료저장탱크·압축기·냉각기·수분분리기·건조기·정제탑·응축기·액분 리기·저장탱크

나. 검사시설

- 1)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AA, ICP 등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나. 먹는샘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 시설을 두어야 한다.
- 4. 정수기 제조업 시설기준
 - 가.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일반세균·맛·냄새·색도·탁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학 수 있다

- 5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 가. 서류검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 1)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 4) 그 밖에 화경부장관이나 유역화경청장(지방화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2. 검사대상의 수거
 - 가.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하다.
 -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 다.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 라,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 시험
 - 가.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나.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불합격품의 처리
 - 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 2) 먹는샘물 · 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부적합 판정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관합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 화경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제20조 및 제28조제8항 관련)

-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 가.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된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수위 · 수량 · 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바.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할 때에는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차.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여야 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 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하다.
 - 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다.
 - 타.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법 제37조에 따라 화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화하여 주어야 한다.
 -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라,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제품교환
 -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화 또는 구입가 화불
 -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구입가 환불
 -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아.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 5. 표지제조자의 경우
 - 가. 부담금증명표지 관련 물품 외의 물품을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장에서 제조·취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 현황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포장하고, 그 포장에 물품명ㆍ병마개종류ㆍ수량 및

제조연웤잌읔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자동계수기는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그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합하여야 한다.
- 마. 표지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단가를 초과하여 먹는샘물 제조 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별표 6]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주기	비고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먹는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대장균군·녹농균(4개 항	매주 2회 이상	3~4일 간격
샘물	목)		으로 실시
пе	분원성연쇄상구균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 살	매월 1회 이상	
	모넬라·쉬겔라(4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매분기 1회 이상	
	서 정하는 모든 항목		
샘물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대장균군·분원성연쇄상구	매주 1회 이상	
	균·녹농균·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매분기 1회 이상	
	서 정하는 모든 항목		

비고

- 1. 샘물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살모델라·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먹는샘물 및 샘물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가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7]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 2.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인 경우:생산량 3천대 단위로 실시
 - 나.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 경우: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3.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 맛, 냄새,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

- 나 수돗묵은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 톨루에, 세제, 카바림,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규구,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 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 4.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 · 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 숰 ્રો 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 가. 시설 : 실험실 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화경학, 식품학, 약학 이 있어야 한다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 나. 장비 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 1) 자동저울(0.0001g) 2대 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 2) 상평저울 1대 년 이상) 먹는물 수집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정제수제조장치 1대 이 있거나「먹는물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 4) 건조기(Dry oven) 1대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 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먹는물 수질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명

-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 과를 졸업한 자 2명
- 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생물학, 임 상병리학 분야(이하 "미생물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이 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 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 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 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1명

및 장비 시 설

는 제외하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 및 원생동물실 워(이하 이 표에서 "대학 또는 대학위"이라 하 | 험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

- 5) 항온건조기 1대
- 6) 항온수욕조 2대
 - 7) 전기회화로 1대
 - 8) 흉후드(Hume hood) 1대
 - 9) 진탕기(Shaker) 1대
 - 10) 가열판(Hot plate) 2대
 - 11)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3대
 - 12) 회전증발농축기 1대
 - 13) 고압멸균기(Auto clave) 1대
 - 14) 배양기(Incubator) 2대
 -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배양기(BOD incubator) 1대
 - 16) 무균작업대(Clean bench) 1대
 - 17) 광학혂미경 1대
- 18)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
 - 19) 여과장치세트(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기 술 인 력

마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 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경력이 3년 이상 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서, 세포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바이러스 분석 을 위한 시료채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시 료채취자 2명 이상

바.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 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 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6개 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크립토스포리 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여과농축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 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 경험자도 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 20) 여과펌프(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 21)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 22) 잔류염소측정기 1대
- 23) 탁도계 1대
- 24) 퍼지-트랜장치 1대
- 25) 광전분광광도계 1대
- 26)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NPD, FID) 2대
- 27)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 2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 29)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 3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 31) 바이러스 시료채취기(조절기, 여과기, 배출기, 수소이온농도(pH) 및 잔류염소조정주입기, 전여과기 등)
- 32) 이산화탄소(CO₂) 배양기 2대
- 33) 양수펌프 1대
- 34) 도립현미경 1대
- 35) 세포 및 바이러스용 무균작업대 각1대
- 36)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 37) 현장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 38) 현장용 온도계 1대
- 39) 멸균용 건조기(Hot Air Oven) 1대
- 40) 온도기록계 1대
- 41) 도립현미경 1대
- 42) 고속워심분리기 1대
- 43) 냉동고(Deep Freezer ; -70℃) 1대
- 44) 팔 달린 교반기(Wrist Shaker) 1대
- 45) 흡인장치 1대
- 46) 볼텍스믹서(Vortex Mixer) 1대
- 47) 회전혼합기(rotating mixer) 1대
- 48) 리톤시험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기 술 인 력	시 설 및 장 비
	49) 미세원심분리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0) 정량펌프 1대
	51) 형광 미분간섭대비(DIC) 현미경 1대
	52) 막여과장치(정수검사시 막여과장치를 사용
	할 경우) 1대
	53) 초음파세척기(정수검사시 막여과장치를 사
	용할 경우) 1대
	54) 교반기 1대
	55) 고속원심분리기 1대
	56)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
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
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
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에는 7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기술인력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 과를 졸업한 자 3명

시설 및 장비

가. 시설:실험실

나. 장비

- 1) 자동저울(0.0001g) 2대
- 2) 상평저울 1대
- 3) 건조기(Dry oven) 1대
- 4) 항온건조기 1대
- 5) 항온수욕조
- 6) 표준망체(KS 규격품)
- 7) 이산화탄소 정량장치
- 8) 전기회화로 1대
- 9) 휶후드(Hume hood) 1대
- 10) 진탕기(Shaker) 1대
- 11) 가열판(Hot plate) 1대
- 12)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 1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 14) 광전분광광도계 1대
- 15)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2대
- 16)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 17)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u>о. от тоо п тете</u>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나. 정수성능검사시설 및 장비
	1)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2) 배관라인
	3) 압력계(원수탱크별 각 1조 이상)
	4)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5)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6) 펌프(원수탱크별 1조)

비고

- 1.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31)부터 42)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목43)부터 55)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2.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과 기능 이 같은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3.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행정처부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행정처분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 2)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ਜ ਦੇ ਆ %	근기합성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17조	등록취소				
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	등록취소				
등록한 경우	제1항제2호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	제1항제3호	6개월				
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	법 제17조					
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업무정지	등록취소			
없는 경우		6개월				
나)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경우	제1항제5호	6개월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	법 제1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제1항제6호	3개월	6개월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법 제17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제1항제7호		1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						
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법 제17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8호		1개월	3개월	6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T T N 8	- 근기합병 -	1차	2차	3차	4차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	법 제17조	등록취소			
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제1항제9호				

나. 표지제조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मी में ही	그리바러		행정처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법 제35조제	지정취소				
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2항제1호 법 제35조제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지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2항제2호	지정취소				
없는 경우 나) 지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고	지정취소			
경우 3) 법 제34조제2항, 이 규칙 제28조제8	법 제35조제					
항 및 별표 5에 따른 규격·표시방법,	2항제3호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도지		경고	지정취소			
사의 반출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 마개를 반출한 경우						
나)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병마개를		경고	지정취소			
반출하고도 병마개반출통보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8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		경고	지정취소			
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초	분기준	
ਜ ਦ ਅ ਲ	1.71日8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법 제43조제	지정취소			
정을 받은 경우	5항제1호				

ी मी में <u>स्</u> रो	그리바러		행정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	법 제43조제	지정취소			
적서를 발급한 경우	5항제2호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	법 제43조제	지정취소			
행한 경우	5항제3호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	법 제43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	법 제43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고하지 아니한 경우	5항제5호		1개월	3개월	6개월
6)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	법 제43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5항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	법 제43조제				
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5항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지정취소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지정취소
시설이 부족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		행정처분	분기준	
위 반 사 항	- 근기합당 -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48조제	허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외의 물	1항제1호	등록취소			
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					
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					
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					
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					
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ol Hl zl Zl	그기버러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2)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	법 제48조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수입한	1항제2호	15일	1개월	3개월	
먹는샘물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저					
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	법 제48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한 경우	1항제3호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48조제	허가 ·			
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	1항제4호	등록취소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		또는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		영업장			
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		폐쇄			
신고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	법 제48조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1항제5호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					또는
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영업장
아니한 경우					폐쇄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	법 제48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	1항제5호		15일	1개월	2개월
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					
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한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	1항제5호		15일	1개월	2개월
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					
게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분기순 		
		1차	2차	3차	4차	
8)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	법 제48조제					
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1항제5호					
<u></u>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			15일	1개월	2개월	
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_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			15일	1개월	2개월	
게 하지 아니한 경우		거ㄱ	여성경기	어어컨키	영업정지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 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 인 경구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Ü	15일	1개월	2개월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_			
아니한 경우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15일	1개월	2개월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6)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 제조			15일	1개월	2개월	
공장에 보관한 경우					-> > -> .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15일	1개월	3개월		
생산제품의 수거 폐기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						
우						

الما الما الما	그리비크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8)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허가취소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						
한 경우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15일	1개월	2개월	
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						
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 자동						
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						
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	여어저기	여어저기	여어저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タエ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			15일	1개월	2개월	
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1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15일	1개월	3개월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이 바 가 첫 그리워크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			15일	1개월	2개월		
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							
관한 경우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		835	15일	1개월	2개월		
한 경우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15일	1개월	2개월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N1	성시기기기	Al Al 2l 2l	A A D 7 1 7 1		
(4)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			15	1개월	2개월		
자의 경우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		1개월	3개월	6개월	폐쇄		
행위·광고를 한 경우		-N1	성실링키	어시키기	어 이 기 기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			15일	1개월	2개월		
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							
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기		0.4	1개월	2개월	3개월		
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포/미련	^실 / II 큰	0/Ⅱ 큰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15일	1개월	2개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0] Hl 1] 5l	그기버러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15일	1개월	2개월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						
한 경우						
(7)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	법 제48조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1항제5호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영업장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					폐쇄	
에 영업상 사용한 경우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법 제48조제					
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	1항제5호					
고를 한 경우						
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여신지기	성신기기	여신지기기	리키 ㅠㄴ	
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또는	
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						
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리키 m 1.	
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		15일	1개월	3개월	허가 또는	
Ŷ					등록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또는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표시·광고를 한 경우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또는	
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위 반 사 항	그기버런	행정처분기준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또는		
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15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한 경우							
나) 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		15일	1개월	3개월	폐쇄		
광고를 한 경우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15일	1개월	3개월	폐쇄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		15일	1개월	3개월	폐쇄		
고를 한 경우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15일	1개월	3개월	폐쇄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							
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23 - 31 - 6 - 31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제5호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한 경우		20일	1개월				

01 H 71 SI	그기내과		행정처음	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한 경우		20일	1개월	3개월	폐쇄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폐쇄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	법 제48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1항제5호		15일	1개월	2개월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1항제6호	어어지기기	성성경기	어신킹기	ə] ə] ə] x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5일 경고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기 - 뉴크 - 노선들 위한한 경투 		20.77	15일	1개월	2개월
 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위·수			10 =	17川包	△/Ⅱ 된
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법 제48조제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항제7호		15일	1개월	2개월
°' 15)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48조제	허가 · 등록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제8호	취소 또는			
	,	영업장			
		폐쇄			
 1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법 제48조제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	1항제9호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7)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	법 제48조제	영업정지	허가·등록		
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1항제10호	3개월	취소 또는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장		
			폐쇄		

ी भी में ही	그리바과		행정처음	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48조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1항제11호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1					
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					
매업자의 경우					
(1)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2)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아니한 경우					
(3) 일반세균이 먹는샘물의 수질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4)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하지 아니한 경우					
(5) 먹는샘물의 제조방법·보존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15일	1개월	3개월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10 E	- 11 E	0 11 6	
경우					
(6)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지 아니한 경우		,	15일	1개월	2개월
(7)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1개월	2개월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15일	1개월	3개월	
초과한 경우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15일	1개월	3개월	
초과한 경우					

			행정처년	 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0-22	15일	1개월	3개월
[전 구독에기의 도되면 경구 			10 =	1/11 包	0/II 현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의 경우					
(1)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		1개월	2개월	6개월	폐쇄
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					
만인 경우					
(2)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					
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					
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지 아니한 경우 19)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버케스크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	1항제12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 등록
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취소 또는
'선강경을 개한한 '상구 		10 년	1/11 包	0/11 包	
					영업장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		영업정지	허가 · 등록		폐쇄
폐기 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		3개월	취소 또는		
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ન	영업장		
- 100년 미년단 10개			폐쇄		
			베케		

이 비 기 최	그리바라		행정처분	븐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20)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법 제48조제	허가·등록			
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	2항	취소 또는			
우		영업장			
		폐쇄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법 제48조제	허가·등록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3항	취소 또는			
경우		영업장			
		폐쇄			

비고

- 1. 3), 8)가)(2)·(4)·(5)·(11), 나)(2)·(3), 다)(1)·(3)·(4), 라)(2)·(7), 14) 및 18)나)(4) 중 1 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2. 18)가)(1) 및 (2)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수 정의 취수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3. 18)가)(3)·(4), 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10]

수수료(제4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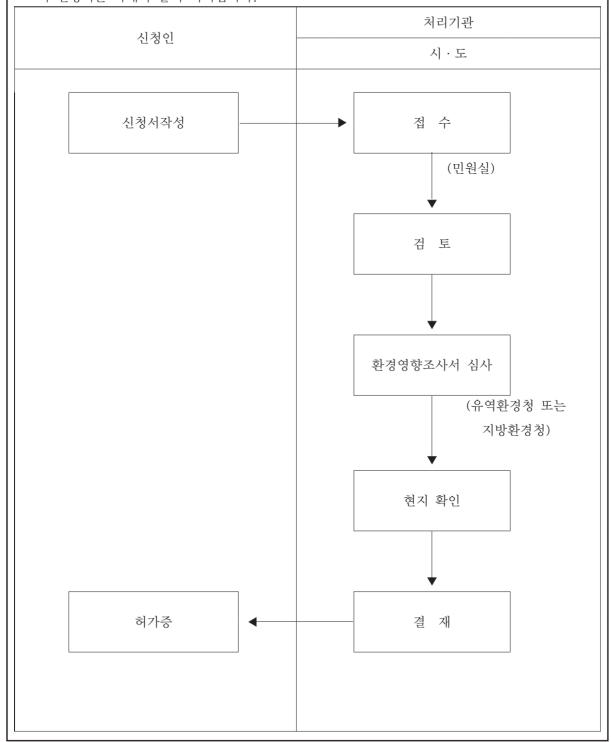
종	별	ī	그거조문	수수료
1. 샘물개발의 허가 · 변경허가 또는	- 연장허가	브	법 제9조	50,000원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50,000원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사형	- 변경	법	세15조	30,000원
4.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법저	21조제1항	50,000원
5. 먹는샘물 제조업의 변경허가		법저	21조제1항	30,000원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법저	21조제2항	30,000원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법저	21조제2항	20,000원
8.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법저	21조제3항	50,000원
9.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변경등	록	법저	21조제3항	30,000원
10. 정수기제조업 · 수입판매업 신고	1_	법정	21조제4항	30,000원
11.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	[경신고	법저	21조제4항	20,000원

[별지 제1호서4	식]								(앞쪽)
		새무	개반처기	· 신청서					처리기간
		<u>п</u> е	711 E 917	1 11 07 1					70일
	① 법인 또는	기관명							
신청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Σ		
	④ 주소						(전	화번호	:)
	⑤ 위치								
	⑥ 면적(m²)				(⑦ 개발공수			개
개발내용	⑥ 면적(m²)				(8 폐공수			개
	⑨ 개발기간								
⑩ 개발한 샘물의 용도									
① 취수계획량	계	13	호정	2호정		3호정	4	호정	5호정
(m³/일)									
		12 대	행기관			@ 71 11 -1 -1 -1	1		기리케그제
환경영향 조사	기관명			대표자		⑬ 작성기간	<u> </u>	(A) A	:사대행금액
「먹는물관리	납」제9조 및 같	는 법	시행규칙	l 제3조제1항	-에	마라 위와 같	이 심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시	구하				- 1	L 0 L		V I Ø	L L/
구비서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수수료
						91∩mm∨	907	mm(시므	8지 54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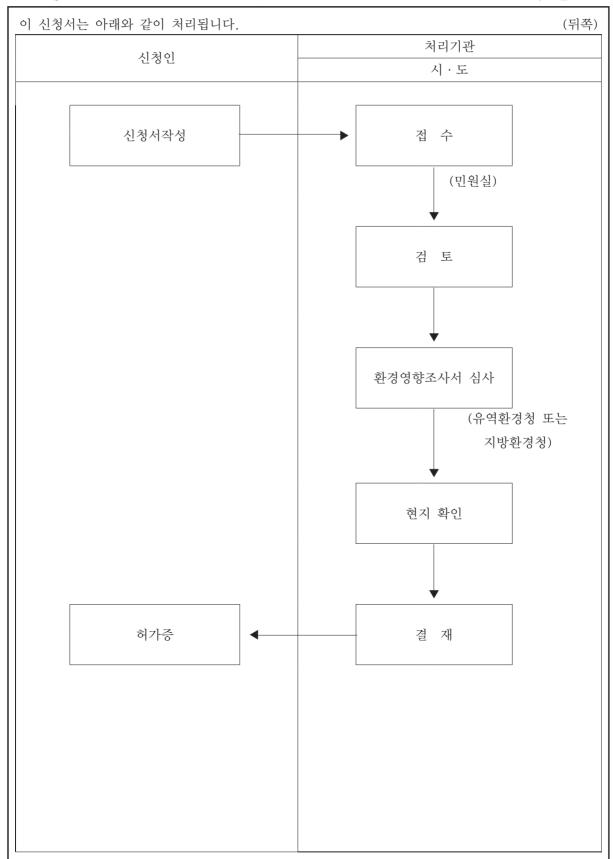
(뒤쪽)

〈작성요령〉

- 1. ⑩개발한 샘물의 용도(먹는샘물, 청량음료, 주류 등)를 적습니다.
- 2. ⑪취수계획량을 취수정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	식]			(앞쪽)
	샘물 개발	<u>:</u>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0일
	① 법인 또는 기관명			10년
신청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	화번호:)
변경사항	⑤ 변7	병 전	⑥ 변	경 후
T.9.41.9				
	⑦ 대 현	J기관	- ® 작성기간	⑨ 조사대행금액
환경영향 조사 서 작성	기관명	대표자	© 7 6/12	© 1/11/8B-1
「먹는물관리	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c	게 따라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u> </u>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시	· 귀하 			
구비서류 1. 환경영향조/	나서 50년			수수료 50,000원
1. 완성성양조/ 2. 변경내용을				JU,000전
			210mm×297m	m(신문용지 54g/m²)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지 제	3호서식]						(앞쪽)
제	<u>ই</u>						
			샘물 7 	개발 허가증			
법인 9	드는 기관명						
Ľ	배표자				생년월일		
	주소						
	위치						
개발 내용	면적(m²)						
2	개발기간						
え) 人:	⊐3/0])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5호정
行下	량(m³/일)						
허가니	배용및조건		,				
「먹는	물관리법」제	9조 및 같은 1	법 시행규칙 🤊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길	·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	l사 민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뒤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増ス	1]	1 -	7]	217
l 별 시		4오	^ 7] ·	의 1

								(앞 쪽)	
		샘물 개발 기	가치	기 시청서				처리기간	
			101	1/1 0/1				20일	
	① 법인 또는	기관명							
신청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2	런화 :)	
	⑤ 위치								
개발내용	⑥ 면적(m²)	m²)			개발	·공 수		개	
	⑦ 개발기간								
개발설비	개발설비 호정(戶井)별 ⑧ 깊이(m)	⑨ 관재질 및 직경(mm) ⑩ 취수계호			-계획	량(m³/일)	
명세									
양수설비	호정별	⑪ 동력(마련	引)) ⑫ 토출관직경(mm) ⑬			양수능력(m³/일)		
명세									
「먹는물관리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u> </u>	9	<u> </u>		
				신청	성인	(2	서명 <u></u>	E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샘물 개발 위치·면적 등) 1부

없음

-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3. 원상복구 계획서 1부
-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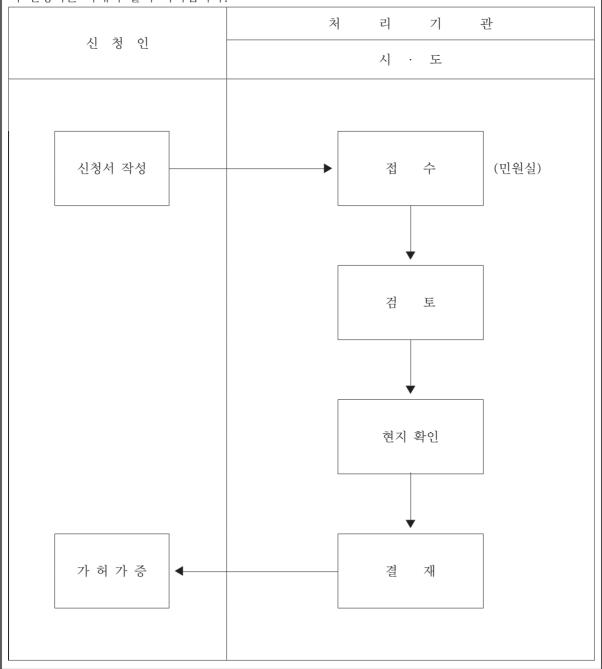
_______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 1. $\$ \sim \$$ 개발설비명세 : 개발하고자 하는 호정별로 취수원의 개발깊이, 관재질 및 직경, 취수계획 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 2. ⑪~⑬ 양수설비명세: 호정별로 동력(마력), 토출관 직경, 양수능력을 각각 기재하고 양수설비의 설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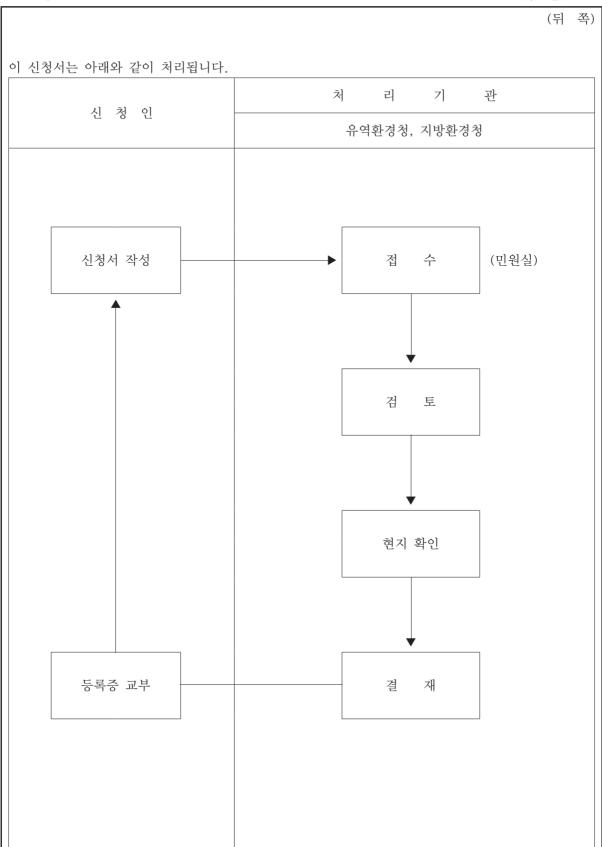


[별지 제	5호서식]					
제	<u>ই</u>					
			샘물 가	발 가허기	가증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위치					
개발 내용	면적(m²)					
" 0	개발기간					
가허가	내용 및 조건					
「먹는	물관리법」제10)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4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가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①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등 록					처리기간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 등 · □ 변경·			신청서		등록	변경등록
			비 변경	<u> </u>				7일	5일
신	① 상호								
청	② 대표자성명				3	주민등록	번호		
인	④ 주소						(전	화번호:)
⑤ 시	무실소재지						(전	화번호 :)
⑥ 변	l경내용 및 사유	_							
「댇	는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	항 또는 저	5항에 따	라	
환.	경영향조사대행자의	□ 등록□ 변경		을 선]청합	납니다.			
				년		월	일		
						_			
						신청약]	(서)	명 또는 인)
유	-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지) ポネル	l 근			당공무원 :		<u></u>	人曰
	건경한(대표시) 세물시	l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수수료 우해당서류 제출)				
	1. 등록 신청하는 경우						·	등록	변경등록
구	가. 법인이 아닌 경우여	에는 그	설립을 증	흥명하	해딩)한다)			
비]	는 서류 1부								
서	나. 장비명세서(사용계		· 체결한	경우					
류	에는 그 계약서 사는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		ı 기거 O	ス머				[0,000.0]	20,000.01
	하는 서류 각 1부	정 옷 그	시식들	0 0				50,000년	30,000원
	2.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	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								
	나. 환경영향조사 대행	자 등록	증 원본						
본	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며 「전자?	정부법.	」제	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다	당공무원	확인사형	}을 확	·인히	는 것에 등	동의합니다	.	
					신청	성인(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화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상 호: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먹는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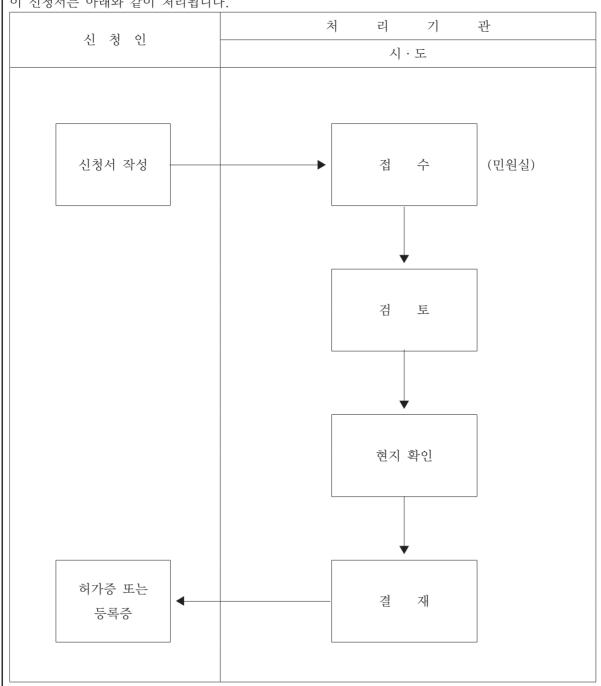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10mm×297[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먹는샘물 제조업	d 허가				7	처리기간
	수처리제 제조업	를 등록		신청서		-	コスラレフ
	먹는샘물 수입편	난매업 등록				1	취쪽 참조
7] 2] 0]	① 성명			② 주민등	록번호		
신청인	③ 주소		_		(전화)	번호 :)
④ 상호			© 90	업의 종류			
4 .9 3			(a)	11 5 TT			
⑥ 제조공장(영업소)					(전화)	버중 ,	,
소재지					(신화)	민오.)
⑦ 제품명							
「먹는물관리법」제2	21조제1항부터 >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형	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_			
	싀	청인		(서명 또는	0])		
	C	0 12		(10 = 6	<i>L</i>)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먹는샘물 제조업의	l 경우					-	쪽 참조
가. 제조시설 및 설	,	를 포함합니	다)				, , , , , , ,
나. 제조공정 설명/	너						
다. 취수정별 취수여	· 계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		치도를 포함힘	남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				늘필름			
2. 수처리제 제조업의		- 11 - 1 - 11	, , ,				
가. 제조시설 및 설		를 포함합니	다)				
나. 품목별 제조공			, ,				
3. 먹는샘물 수입판매							
가. 사업계획서(수업		구)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3		에 맞음을 츳 ^r	명하는 .	서류			
1. 2 1 1 11 1105	1 1C	, ,,,,,,,,,,,,,,,,,,,,,,,,,,,,,,,,,,,,,			nm[시무욧지 !	E 1 cm / mm ² (7	에 SL Q 프 / I

		(뒤 쪽)
구 분	처리기간	수 수 료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10일	50,000원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7일	30,000원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7일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刀人	리 레고서	소이되네어 /	·)	да пи	러기크()	1		처리기간
		タナ	기 세조입 '	수입판매업 (.⊔′ί	신끄 □번	경신끄)^	1		7일
① 사업장	명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	지							(전화번호	:
⑥ 제품명						⑦ 규격	또는 모	텔		
⑧ 여과방	식					9 유효?	정수량			l
⑩ 사용소재		기능별	여과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정수제			소재명							
			규격							
			① 구조							
검시	사항 5	루	⑩ 일반정수	수성능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③ 특수정수	수성능						
수입	(14)	원산지			(15)	수출국				
판매의 경우	16	수입량			① ス]	보관시	설소재			
「먹는물	관리	법」제2	1조제4항 및	! 같은 법 A]행-	규칙 제1	 0조제1항	- 生	는 제6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시 · 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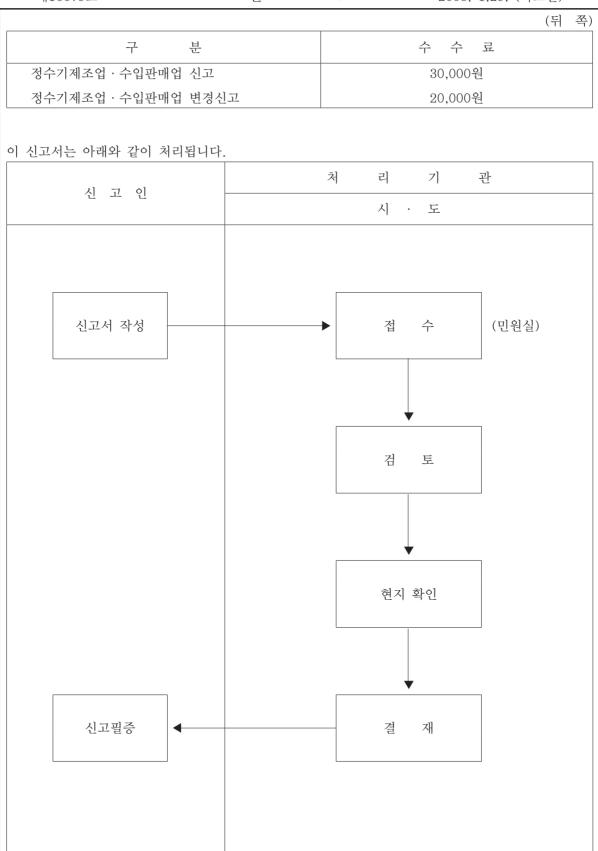
※ 신고 시 구비서류

1.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수수료 뒤쪽 참조

-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 나. 보관시설명세서
-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1. 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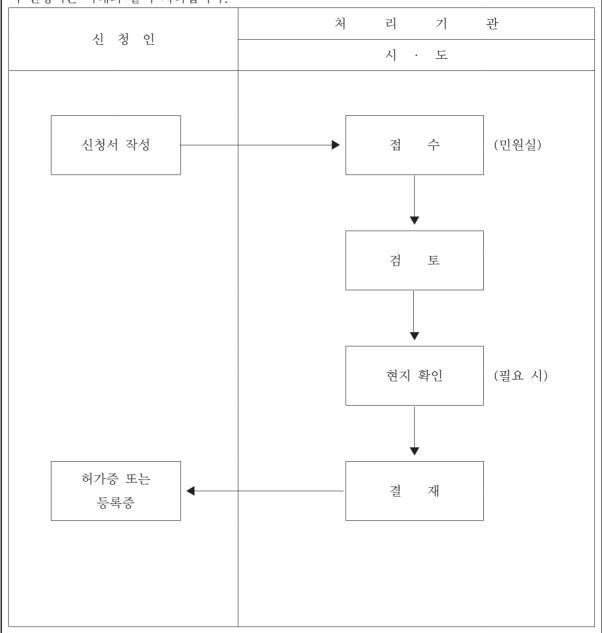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먹는	샘물 제조업 변	경허가			처리기간			
□ 수처	리제 제조업 변	경등록		신청서(신고서) 뒤쪽참.				
□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영업	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		T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전화박	번호:)		
(4) 상호			⑤ 허기	가·등록번호				
⊕ 8±			또는	신고번호				
		변경 전			변경 후	<u>5</u>		
변경사항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또는 같은 법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	또는 인)			
시 · 도지사 구	ठॅ}-							
						수수료		
w Julia								
※ 구비서류	ス ㅠ 1) コス:	러기 이번				뒤쪽 참조		
1. 허가증ㆍ등록		명시 원몬 [경허가 또는 변7	이 드 근 미	. 쉐다.중나 나이				
		!경어가 또는 변? !업자의 지위승계			- }			
0.71110/THE	0 0 1 1 111 0	BAT ATTOM	-1 6 T	с 910 H 71°	17			
			0	10	2] [[O 7] [(4g/m²(재화요프)]		

			(뒤 쪽)	
구 분	근 거 조 문	처리기간	수 수 료	
변경허가	법 제18조제1항	10일	30,000원	
변경등록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5일	3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	법 제22조제3항	3일	없음	
신고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제 호		먹는샘물	- 제조업	허가증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제조공장 소재지							
⑤ 샘물개발 허가기간	년 년		일부터 일까지	⑥ 제품명			
⑦ 취수정 위치 및 수				⑧ 취수한도량 (m³/일)			
⑨ 허가조건							
「먹는물관리법」제21 니다.	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제7	'항에 따리	라 위와 같이	허가합
			년	월	일		
		특별(광 도지사	역)시장	인			
				210mm×2	97mm[甘 <i>君</i>	<u></u> 은용지(1종) 1	20g/m²l

				(뒤	쪽)
〈변경사항〉	T				
연월일	내	<u> </u>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제 호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제조공장 소재지		
⑤ 제조품목		
⑥ 등록조건		
「먹는물관리법」제 니다.	2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보 존용 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제	<u>ŏ</u>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① 상.	<u>ŏ</u>										
② 대.	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	제 al	사무실									
(±)	AI AI	보관시설									
⑤ 수	국명			제조회사							
입 처	원수의 종류			제품명							
⑥ 등	록조건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광역)시징 지사	인							
				210mm×9		지(1종) 120g/m²]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Z-l	스키	제조업 · 수입] 교레어 시 :	고즈며 서		
제 호			十八		4번배급 겐- 	<u> </u>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생년월	일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제품명				⑦ 규격 또	는 모델			
⑧ 여과방식				⑨ 유효정~	수량		Q	
⑩ 검사기관					·			
① 사용소재	기능별	여과/	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정수제)	소재명							
	규격							
	⑫ 구조							
검사항목	검사항목 ③ 일반정수성능			맛, 색도,	탁도, 일반서]균		
	④ 특수정수성능							
			1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변경사항〉

(2010)							
		루					
연월일	제품명	규격 또는 모델	우 효 정수량	일 반 정수성능	특 수 정수성능	검사기관	확 인
	I .				1	I	

〈처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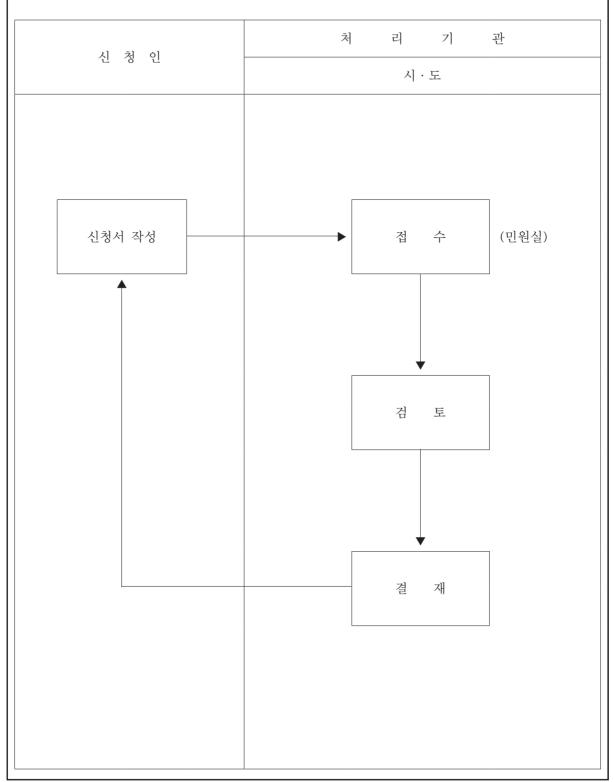
연월일	내 용	확 인

보

별지 제15호서식]						(앞 걸	
	□휴업						처리기점	
	□재개업			신고서			즉시	
	□폐업							
	□허가 또는	: 등록·신고/	사항 변경			1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번호			
선포선	③ 주소				(전화	·번호 :		
ol ol v	④ 상호			⑤ 영업	의 종류			
영업소	⑥ 소재지		 (전화변					
		변경 전			변경	후		
⑦ 신고내용								
⑧ 신고사유	제21조제6항 및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	<u> </u> 고합니	다.	
	제21조제6항 및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	<u> </u> 고합니	다.	
	제21조제6항 달	및 같은 법 시 년	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	<u> </u> 고합니	다.	
	제21조제6항 달					고합니 명 또		
	ζ).			일				
「먹는물관리법」 특별(광역)시기 도지사	ζ).	- III	우리	일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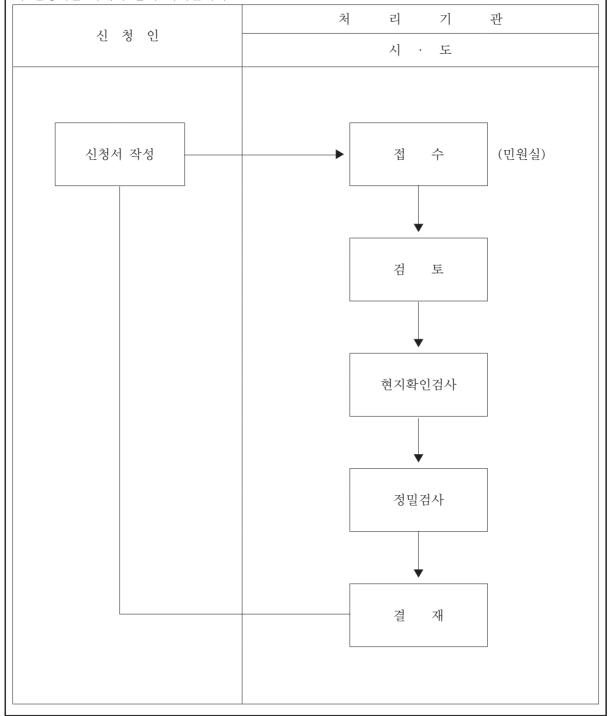
1. ⑧ 신고사유: 휴업, 폐업, 재개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6	호서식]										(앞 쪽)
			ㅁ먹는	샘물						처	리기간
			□수처	리제 수	수입신]고서					
			□용기								25일
	상호		_			수입업]자등록번.	<u>ই</u>			
① 신고인	성명(대표	자)				주민등	록번호				
.012 U	주소							(7	전화번호	:)
	번호	품목	원산지	규격	딘	·위	단가	수량	급 급	액	용도
(2)											
신고사항											
③ 수입일			4	<u> </u> 수출국				 ⑤ 선적	보항		
⑥ 선적연				 수송편 및	서명	 		8 수 _입			
						-					
⑨ 수입보	.관창고			화물사고유	무			⑪ 제2	조회사		
⑩ 수입대	행업체							(7	전화번호	:)
13 I/L				(14)) B/	'L					
	관리법」제2 경청장(지박		l	법 시행규 [;] 년 월		일	체1항에 띠 고인	라 위외) 같이 선 (서명 5		
구비서류										2	수수료
	, .,	-(수입판미	매업등록증	사본, 내용	\ 증 명	서(송	장), 선적	증명서 분	등을 포함	ŀ	없음
2. 원수의	수질검사	서 사본(밀	벅는샘물만	해당합니다	})						
3. 제조일	자를 증명한	하는 서류	(제조자가	제품의 제:	조일기	자를 표	포시한 경우	우는 제의	외합니다.)	
4. 자가기	준 및 규격	검토서(수	수처리제만	해당합니다	})						
5. 먹는샘	물의 원수	가 적법함	을 증명하	는 서류							
							210n	nm imes 297	mm(신문&	소 지	$54g/m^2$

〈작성요령〉

- 1. ③~⑪ : 내용증명서 및 선적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 ⑩수입대행업체: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변기 제12 중서	시1

O F	- XX \
12	41

										(앞 쏙)
			く ス) っ	개선부담금 부	크리 케이 샤	기원기			처i	리기간
			广包人	'位十百百 m	F파 세퍼 12	1.871				7일
	① 상호								·	
신청인	신청인 ② 대표자					③ 주	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	호 :)
	수출(납품 · 제공)실적									
⑤ 용량 ⑥ 수출(납		수출(납품	<u>E</u>)	8 수출(' ⑦ 수량		납품)	⑨ 수출국		⑩ 수	출일
규격		단가		0 10	판매금	-액	(납품·제공처)		(납품·	제공일)
① 수출세	 관명				<u> </u>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

신청인

-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 서 사본
-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재난구호기관·단체장 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6679호

<u>ک</u> ا	청	٥ì		처	리	7]	관
'긴	Ö	ŭ.			시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환경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년)

「먹는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허가(-	등록)번호			
③ 대표자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1년	□제조 □수입		
⑦ 원수구분) 원수구분					□통상판매 □특수판매		
⑨ 용량및 용기규격별	구분	⑩ 판매단가		판매량 (개수)	⑫ 판매금액 (원)	⑬ 특수판매 회사명		
계								
20 l								
18.9 l								
10 ℓ								
1.8 ℓ								
1.5 ℓ								

붙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 작성요령

- 1. 제조·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실적보고서는 제조·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⑦원수구분: 지하수 · 용천수 · 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판매방법: 정상거래는 통상판매란에,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표기합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난에 모두 표기합니다.
- 4. ⑨용량 및 용기규격별: 제품의 용량별로 적으며,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⑩개당 판매단가는 연간 총 판매금액(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 제외)을 총판매량으로 나는 금액.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총판매량으로 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 ⑪판매량은 연간 판매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통상거래와 특수거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한 양을 적습니다.
- 7. ⑫판매금액은 연간 총판매금액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은 제외).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총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8.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의 명칭을 적습니다.
- 9. 붙임서류 중 영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두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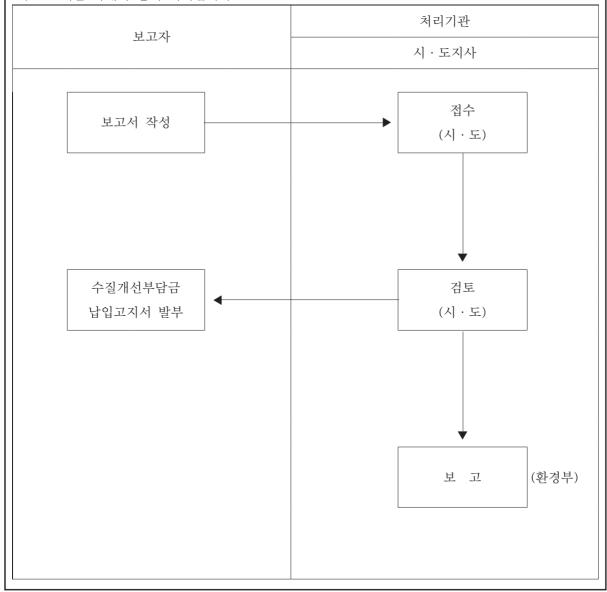
게10079호	Ľ	 2008. 1.25. (되포 글)
[별지 제20호서식]		
		(0)

												(앞 쪽)
문	서번호	:				시행일	자 :		년	월	일	
받	승:	시・도지	l사 보				: 대3	표자	- ((서명 또	는 인)	
제	목: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	1서(년	분기)						
		「먹는물	관리법」제31조	., 같은 ㅂ	법 ㅅ]행령 제1	2조자	∦2ē)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
		2항에 U	⁾ 라 아래와 같	이 보고함	납니다	구 .						
1	① 상호				② 허가(등록)번호							
3	대표지	.}-			4	주민등록	번호					
3	대표지	1			(5)	사업자등	루번호	Ē				
6	사업경	상소재지			7	생산구분				□ 제조	수	입
						ചിവിവി				□ 통성	-판매	
(8)	⑧ 원수구분				(9)	판매방법				ㅁ 특수	판매	
			(10)	(1)			12 1	판매실적				
			전분기에서	제조 또	는		국ι	H		국내	13	14)
	구	분	이월량	수입량		물량 -			금액		재고량	특기
			(개수)	(개수	.)	(개수)	국의	외	(원)	국외	(개수)	사항
(15)	합계											
	16											
	- }기	l										
<u> </u>	}량											
규	격별	l										
									Ę	: 당공무	<u> </u> 원 확인사	
7			보고자(대표자) 제출서	류			(동				해당 서류
구 비										ス	· (출)	
서			합계표 또는			,	.,	나업	자등록	증		
류]표는 먹는샘물 미. 레다침나리		물는	불과 함께	판					
	" 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본			의 처리와 관형				<u> </u> 213	조제	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 담당	당공무원여	이 위의 담당공	무원 확업	인사형	항을 확인	하는	것。	네 동의	합니다.		
						보	고자((대포	도자)		(서	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1. 제조·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실적보고서는 제조·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 야 합니다.
- 2. ⑧원수구분: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⑨통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통상판매란에,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적습니다.
- 4. ·용기용량 규격별: 제품의 용량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6679호	-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지 제21호서	식]							
					(앞 쪽)			
문서번호:			시행일	자: 년	월 일			
받 음:시·도	지사		보 냄	: 대표자(서명	또는 인)			
제 목:기타샘	물의 샘물사용	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	년도)				
「먹는	물관리법」제31	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	4항에 따라 샘들	물사용량 및 판미	매실적 등을 아	래와 같이 보.	고합니다.			
① 상호			② 샘·	물개발허가번호	5			
③ 대표자	③ 대표자			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	지		⑥ 업 ⁼	<u>주</u>				
⑦ 샘물취수량	:(톤)							
8 제품생산량		⑨ 용수사	-용량(톤)		⑩ 제품에샘물을 사용한			
(톤)	상수도	샘물	공업용수	기타	양(톤)			

⑫재고량(톤) ⑩판매금액 ⑪ 전년도 이월량(톤) ⑬판매량(톤)

붙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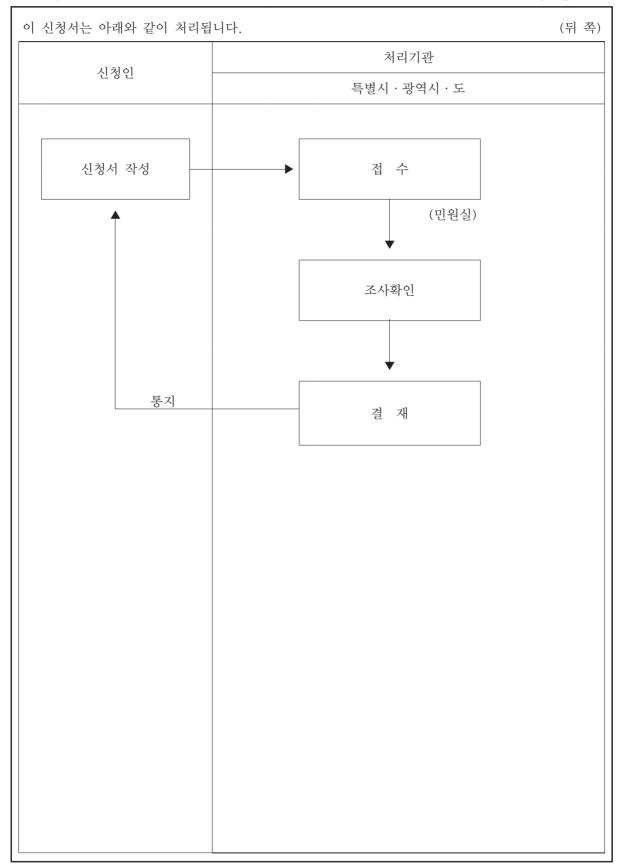
(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_ * 작성요령

- 1. ⑤사업장소재지는 샘물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2 ⑥업종은 음료류. 주류 등을 적습니다
- 3. ⑦샘물취수량은 연간 샘물을 취수한 총량을 적습니다.
- 4. ⑧제품생산량은 샘물을 개발·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샘물을 사용하는 제품의 연간 총생산량을 적습니다.
- 5. ⑨용수사용량은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용수를 상수도, 공업용수, 샘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 ⑩연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샘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 7. ⑪전년도 이월량은 전년도에 샘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중 해당 연도로 이월되는 양을 적습니다.
- 8. ⑫재고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한 제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적습니다.
- 9. ⑬판매량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총량을 적습니다.
- 10. ⑭판매금액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총금액을 적습니다.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3호서]식]									(A) XX)
											(앞 쪽) 처리기간
		<u> </u>	-질개선]부담금 >	징수유∘ 	계 · 튼	분할납부	후 신청/	서		7일
		싱	호								
1 4	_ ţ부의	대	표자								
무자		~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2) 징수	유예	신청/	· 사항			
신청시	 }유										
부고	과일자	부과기	간	부과금	·액		징수유	예 신청	기간	징수유예 4	· · · · · · · · · ·
				(3)) 징수	유예	신청/	사항			
분납일	 실자		분납금	납금액			분납일	실자		분납금액	
1차							4차				
2차							5차				
3차							6차				
「먹	L 는물관리	법 시행규	<u>」</u> 칙」제2	25조제1형	}에 따i	라 위	 와 같	l 이 신청 [·]	합니다.		
				1	년	월		일			
EH	멸 (광역)시	l スト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l^8	귀하								
	비서류										수수료
1.	납부통기	시서									
2.	징수유여	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3.	담보제공	공에 필요한	<u></u> 서류								
-							-		210 mm \times	297mm(신문용	지 54g/m²)



[별지	제24호서스	1]						(앞 쪽)	
			수 ²	 질개선부담금	징수유	예、분할납부			
				□ 승인		E al II			
				□ 불승역	인	통지서			
1	상호	<u> </u>							
납	대표	자				생년월일			
부	주소								
의	사업	スト							
무	소재						(전화번호:)	
자	11 A	^							
2	부과일자	③ 부	과기간	④ 부과급	금액	⑤ 분할납부금액	⑥ 차감부	-과금액	
					1 2 2	H-1335			
	분할횟수			⑦ 분할납부ㅎ 부기한	H가 및	물허가사항 분할납부금액	브링키	21. O	
	<u> </u>		됩ㅋ	r기인		군일립구급액	풀어/[/	불허가사유	
	2차								
	3차								
	4차								
	5차								
- F-1	6차	1 -11 -1 -	1		1 0101		ما حاد ا		
'넉	는물관리법	시행규족	↓」제25소	:제2항에 따리	†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느립니다.		
					년	월 일			
				특별	(광역)시	기장	인		
				도지	사		- 1		
× 0	 난내사항							수수료	
	., , -	크자가 디	-으 가 ㅎ	이 어느 하니	나에 해대	당하는 경우에는 「먹	느문과리법, 제	없음	
						o 에는 o l ll는 그 그 체납액을 일시에			
	다.	~14 11		1 개 개분 기교	-9	4 /W H T E E E T W	0 2 WH		
	, -	1 기둥). 키	&]. <i></i>]]]]	기 시미청. 거	Ó				
				지 아니한 경		이 기미리 스크레 및	그리 사이의 귀		
		등 남모의	모선에	벌요안 완경-	무상판의	리 정당한 요구에 따 -	드시 아니한 경		
	우	7 .1 -1	ı.ı -ı ⇒	alelal ater-	- ·		ما حالم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	나 다른	사정의 변화	로 그 수	구예가 필요 없다고 ⁽	인정되는 경우		
						910mm×997mm[入]」	I O 7 FA . / 2/-	레 중), O 표 / 1	

[별지 제25]	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급 징수유여	fl 취소통지	서	
	상호	5					
① 납부의	대표	자			생년월	일	
무자	주소	_				'	
	사업장소	:재지			(전화번호:)	
			② 정수	-유예 취소	_ - 사항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	한	금액
징수위	우예 기간					<u>'</u>	
			3 1	분납허가시	-항-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	·핵	세목	연도·기분	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④ 취소일지	}						
⑤ 취소사유	}-						
	년	월	일자로 귀하에게	승인한 -	수질개선부	담금 징수유예를	「먹는물관리
법 시행규	구칙」제25	조제3항어	따라 위와 같	이 취소함	을 통지합니	니다.	
				년	월	일	
				닌	ভ	뒫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210mm×297mm(숙	□문용지 54g/m²)

[별지 제26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 환경부장관

문서번호

보냄: 시 · 도지사 📵

받음 : 환경부장관

제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년 분기)

「먹는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먹는 샘물

업체명	용량규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부과액	정수액
(대표자)	(()	(개수)	(개수)	판매액	十四 智	79十門
계						
	소계					
	소계					

2.기타샘물 사용제품

업체명 (대표자)	업종	제품생산량 (톤)	샘물사용량 (톤)	제품 판매액	부과액	징수액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ı	増ス	11			» ì	217	
	ᅵ먹ㅅ		127	Q	M	실미	

	처리기간 즉시		
병마개종류	용량(ℓ)	수량(개)	사용기간

「먹는물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먹는샘물 제조업자 : (서명 또는 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귀하

보

[월시 세20오시식]								
	병마개반출통보서							
반출연월일	년월일 병마개종류 용량(l) 신청량(개) 반출량(개)							

「먹는물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거래명세서 등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9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시·도지사

보 냄: 먹는샘물 제조업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

「먹는물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상황을 보고합니다.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

성이의 병마개	년 당마개 용량	입고		반품		출고		폐기		n) =	
연월일	종류	(()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비고

[별기	· 제30호서식]							
		Hiг	마개 폐기확인	시청서				처리기간
		-81	'[기 페기확인	선생시				7일
	① 성명				② 주민등	로버ゟ		
시	신 (법인은 대표자)				∅ T 1 3	국인오		
청	③ 명칭				④ 전화번	호		
인	⑤ 주소				 ⑥ 사업자	드로버ㅎ		
인	(법인은 본점 :	소재지)				0 기 간포		
	⑦ 제조장소재지							
			신:	청내용				
8 E	병마개종류	9) 용량(l)		⑩ 수량	냙 (개)	(1)	비고
12 -	구입 연월일				③ 폐기예?	정연월일		
<u>4</u>	ᅨ기방법		-					
(15) D	ᅨ기장소		-					
16 4	신청사유							
17)	그 밖의 사항							
ΓĘ	먹는물관리법」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띠	나라 위와 길	날이 병마개	의 폐기확인
을 선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l 주시기 비	남라나다.					
					년	월	일	
			먹는샘물 제	조업자: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제 호							
	위 사실을 확인힙	나니다						
	11 122 9 2 1	1 1 1 •						
				13	<u>ু</u>	ol		
				년	월	일		
			시·도	지나	인			
			/ Y - Δ-	e 17 T	Ľ			
								수수료
								없음

[별지 제31호서식]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연 개시		종	료 료	계수기	생산-	구분		확인자		.n-	
월일	시간	계수 번호	시간	계수 번호	통과량 (개)	불량 (개)	완제품 (개)	직	성명	인	비고
						21	Omm×297	 7mm[보존	[^드 용지(1-	돌) 12(])g/m²]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32호서식]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시	봉인	해제	해제 시	해제		확인자		ul =
번호	명칭	연월일	계수	사유	연월일	계수	사유	직	성명	인	비고

364mm×257mm[보존용지(1종) 120g/m²]

.,		

[별지 제:	33오서식]				(앞 쪽)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	신청서	,	처리기간 7일				
	① 상호								
신청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	번호:)				
		수출기	계획						
(5)	용량규격	⑥ 수량	⑦ 수출국	8	수출예정일				
	「먹는물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용 먹는샘물· 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E지사 귀하								
		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	문용지 54	l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수거 · 약	압류증							
	상호									
① 수거(압류) 품제조업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재지		,							
	품명		수량							
② 수거(압류) 내용	사유									
11 0	일시		장소							
제조연월일			피수거							
			(압류)자	(서명 또는 인)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청	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마라 위와 같이 수거·압						
류하였음을 증명한	합니다.									
		년 월	일							
		수거 · 압-	류자 소속:							
	지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o o ·	(10 40 0)						
	귀하									
			210mm>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제 호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사진 (2cm×3cm)

소속 :

직위(직급):

성명 :

생념월일 :

위 사람은 「먹는물관리법」제7조,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60mm×9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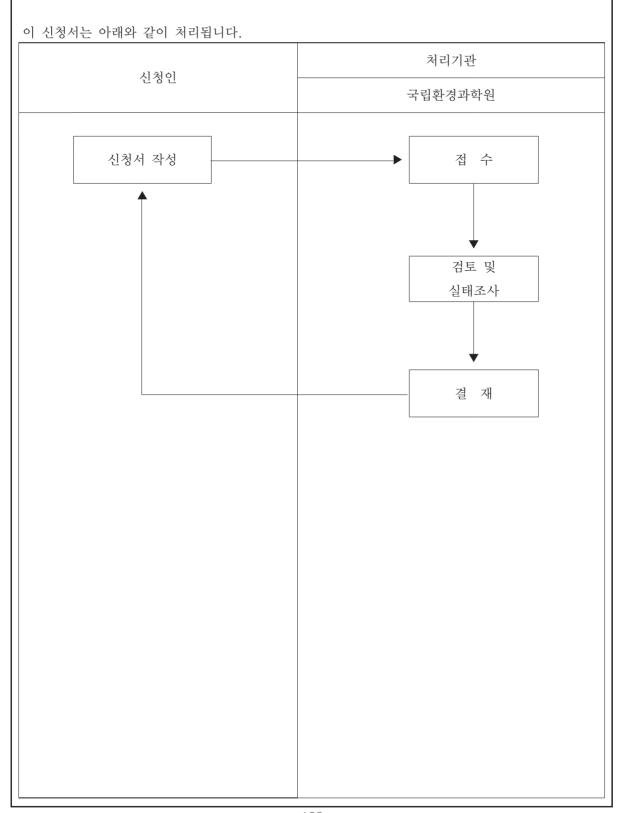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조사·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처리기간
□ 수처리제 검사기관	지정신	신청서				0001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	등록번호	
₩ d 6 d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⑤ 검사대상및범위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35조기	세2항에 t	다라 위외	- 같이 신청합니	l다.
	li L	1	월	일		
신청	인 :		(서명 또	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	<u>R</u>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	현황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을 포함한 검사	업무에 :	관한 사항	-		
L			210 \(\(\) \(\)	07 [3]	크요지 5/10/m²(-게 중). O 표 / 1

보

(뒤 쪽)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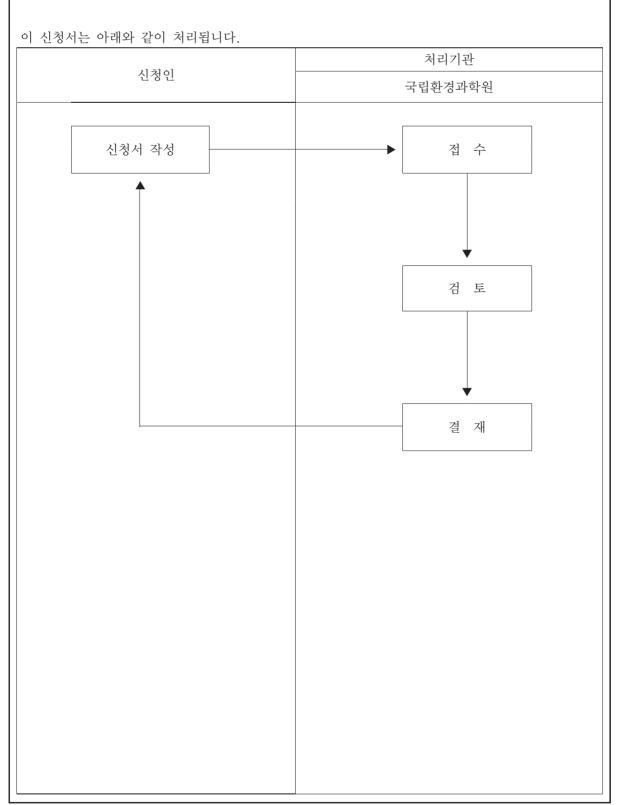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제 호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지정서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관명 : (법인 또는 상호명)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생년월일 :
실험실 소재지 :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 니다.	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⑩
	가입된 경의학전 8 및

				(뒤 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내용		21.1					
년 년 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확인					

제16679호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처리기간
□ 수처리제 검사기관	변경신	<u>l</u> 고서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	등록번호	·
U 선정한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⑤ 검사대상및범위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후 니다.	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3	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Ę	월	일		
신고	인 :	(서명 또	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검사기관 지정서				무용지 54g/m²	(a)=1 A = :-

〈작성요령〉



[별지 제39호서식] 행정처분대장 제16679호 일련 문서번호 및 소재지 청문내용 처분내용 및 기간 업소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 번호 발송일자 벆 1.29. (화요일)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m²)

H

				과징금치	분대장						<u>*</u>			
1	3 4		(6)위반내용 (5)			위반내용	9	10	(11)		제16679호			
발행 번호	납부 고지 연월일	상호	성명 (대표자)	주소	⑦ 일자	8 위반행위	과징 금액	과징 금액			납부 기간	납부일	비고	(A)
											中			
											(
											田			
											2008.			
											3. 1.29.			
											. (화요일)			
							364mm	×257mm[9	인쇄용지(2·	급) 60g/m²]	인)			

[별지 제40호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십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화요일)

\mathbf{J}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5호

첫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유리위원회가 첫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첫소년 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 3. 벌칙내용
 - ○첫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T .		1		
일련번호	제 목	·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426	술취한여승무원과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1901	2008. 1.14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27	SEXY미녀와야수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1902	2008. 1.14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28	문닫고!과외오빠랑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1903	2008. 1.14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여대생★짜리한MT★노출포즈

[무용과킹카]S라인★환상자태

목

정보위치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정보제공자

(주)밝은누리정보

(주)킨모바일

(주)킨모바일

(주)MEG

(주)MEG

심의번호

831904

831962

831963

831964

831965

831967

831968

831970

831971

832010

832011

결정년월일

2008 1 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2008. 1.15

제

행복한공주와제비

매력발산★섹시S라인

라인강조ᇓ이국적가슴

일련번호

2008 - 429

2008-430

2008-431

2008-438

2008-439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제1
2008. 1.29	6679호
2008. 1.29	
2008. 1.29	
2008. 1.29	
2008. 1.29	中
2008. 1.29	压
2008. 1.29	,-
2008. 1.29	21
2008. 1.29	008. 1.29
2008. 1.29)9. (화요
2008. 1.29	.일)

결정사유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선정성

자율표시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440	도발적★몸짓★아찔한그녀	무선인터넷	(주)MEG	83201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1	흘러내린[속옷]꽉!잡은현장	무선인터넷	(주)MEG	83201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2	야시시[민소매]너무큰가슴	무선인터넷	(주)MEG	83201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3	야하게★포즈잡은★다리사이	무선인터넷	(주)MEG	83201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4	살짝가린[핫팬츠]은밀함	무선인터넷	(주)MEG	83201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5	[초미니]아슬아슬~엉덩이	무선인터넷	(주)MEG	83201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6	노출된가슴[삐져나온]SEXY	무선인터넷	(주)MEG	83201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7	점점커지는♡신비한그녀슴가	무선인터넷	(주)MEG	83201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8	너무큰슴가★너무작은드레스	무선인터넷	(주)MEG	83202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49	SEXY뒷태[엉덩어사이]끈!	무선인터넷	(주)MEG	83202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50	꼬다만[다리사이]살짝보인매력	무선인터넷	(주)MEG	83202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51	[완소글래머]다혜★꽉조인가슴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262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이엠텔

정 보 제 공 자

(주)킨모바일

심의번호

832629

832657

2008. 1.15

자율표시

결정년월일

2008 1 15

결정사유

선정성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 1.29

제16679호

中

H

2008

1.29.

8년)

i으

2008. 1.29

GII

일련번호

2008-452

2008-463

제

청순섹시★새신부처럼요염하게

미끈쎄끈☞슼립S라인작력

목

정보위치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464	민망포즈로★섹시유리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5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65	부끄러운♥살짝만공개할께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5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66	새장속▶나유리섹시유혹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67	섹쉬함에~♥흠뻑젖어봐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68	아슬아슬~★비키니사이로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69	아찔샤워중♬짜릿한느낌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0	외출전아찔♥셀프카메라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1	저와함께♥와인한잔하세요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2	청순한줄알았더니♡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3	초섹시\Hot/란제리룩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4	침대에서☜외로운몸부림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75	침실에서※보일듯말듯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6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일련번호	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4	76 큐티걸가슴이 ¶	▶아담사이즈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	77 D컵글래머♥ <i>초</i>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	78 Hot완전특급™	망사란제리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	79 I♥LOVE~나유	구리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0 그녀들의※후근	-섹시컷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1 끌리게만드는c]쁜여자애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2 나의매력은▶5	-출아니겠니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3 다보이는♥가슴	<u> </u>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4 보일듯말듯☞팋	날의실현장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5 쇼파에서※부ㅂ	적부비적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7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8	86 아찔한♥알바니	 f침실로의초대	무선인터넷	이엠텔	83268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_	7	
'	3	
٠,	_	

제

알바녀♥맘먹고노춬판매

엉큼한☞탈의실로~

오빠여긴★탈의실인데

완전대담※벗고판매※

욕실에서 5깨끗이샤워

위아래◉노출하고픈여자

이정도면♥다팔릴만하지

집에서♥나만기다린그녀

침실에서 ↓ 느끼는여자들

초절정★문제의매장

외로운☎야식시간전화해줘요

일련번호

2008 - 487

2008-488

2008-489

2008-490

2008-491

2008 - 492

2008-493

2008-494

2008-495

2008-496

2008-497

목

정보위치

무선인터넷

정 보 제 공 자

이엠텔

심의번호

832681

832682

832683

832684

832685

832686

832687

832688

832689

832690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498	여성그룹☆야한본능S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499	아나운서K양!완전노출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0	월드컵미녀♥후끈섹시M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1	색즉시공★H양라인절정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2	후끈섹시!전라누드S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3	거침없는K양☆야한상상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4	어린배우★풍만볼륨K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6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5	SeXy가수!U양의착한몸매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7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6	상큼보조개♥거침없는C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7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7	과감한몸짓♡유혹댄스J양	무선인터넷	(주)에어패스	83307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8	백설공주는바람둥이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361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09	신데렐라!유혹의각선미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361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10	[천천히]알몸거유	유★못참겠어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1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1	[누워바]수영장약	곂★급박탈의중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2	[빨리해]치마걷여	거★맨몸찰영중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3	[첨이야]떨리는?	가슴★살살다뤄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4	[거유녀]빵빵거유	유★조심스럽게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5	[샤워중]물줄기기	가★너무강해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6	[심심해]쿠션대고	고★홀로낮잠중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7	[기다림]무릎꿇죠	고★뒤로돌아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412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8	욕실공주[은밀힌	<u>ㅏ</u>]직찍셀카	무선인터넷	(주)MEG	83416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19	자극적포즈♥핑.	크빛입술	무선인터넷	(주)MEG	83416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0	손바닥비키니♥.	보일락말락	무선인터넷	(주)MEG	83416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1	분홍불빛아래♥.		무선인터넷	(주)MEG	83417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22	물속에서노는[은밀한]현장	무선인터넷	(주)MEG	83417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3	뽀얀속살★시원한노출	무선인터넷	(주)MEG	83417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4	과한포즈[여대생]야릇한표정	무선인터넷	(주)MEG	83417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5	한군데[집중된]그녀의발육	무선인터넷	(주)MEG	83417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6	미녀의몸부림◉터질듯한순간	무선인터넷	(주)MEG	83417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7	180도변한[흥분한]헌팅녀	무선인터넷	(주)MEG	83417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8	[도발!]원하는대로♡해바요!	무선인터넷	(주)MEG	83417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29	선홍빛입술[T팬티사이]활짝	무선인터넷	(주)MEG	83417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0	샤워친구 ♡아사미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473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1	터진브라★아사미 훔처보기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473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2	HOT☆H컵요리사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473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33	악마의속옷★뽀얀살결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473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4	젖은몸★달래는 에리카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473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5	유혹적인★섹시S라인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569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6	육감적인 몸매★이기적인 S라인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570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7	초섹시♡유혹의라인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570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8	치명적인 유혹●섹시바디라인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83570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39	미시도 때론 과감하고 싶다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6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0	야한 속옷입고 소파에서 낮잠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1	원피스 사이로 보이는 매력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2	남편을 유혹하는 자극적 의상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3	자신있게 노출하는 거유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г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44	밤에 외출을 준비하는 미시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5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뜨거운 포즈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6	비키니가 작아보이는 슴가	무선인터넷	씨앤케이미디어	83587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7	[하소연]탈의실★도발셀카	무선인터넷	(주)MEG	83587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8	소연이의[가슴키우기]공개	무선인터넷	(주)MEG	83587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49	유혹만발[가슴끈]흘러내려	무선인터넷	(주)MEG	83587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0	[하소연]자취방★깜짝노출	무선인터넷	(주)MEG	83588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1	탐스런가슴[소연]완벽몸매	무선인터넷	(주)MEG	835881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2	매끈한각선미[거침없는]소연	무선인터넷	(주)MEG	83588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3	스케줄후[하소연]샤워현장	무선인터넷	(주)MEG	83588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4	에로영화보다[직접연기]소연	무선인터넷	(주)MEG	835884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55	완소슴가[하소연]숨가픈호흡	무선인터넷	(주)MEG	83588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6	[도발!]원하는대로♡해바요!	무선인터넷	(주)MEG	83588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7	SEXY고양이♥드러난 하얀살결	무선인터넷	(주)MEG	835887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8	[삭제수위]다리사이★그게모야	무선인터넷	(주)MEG	835888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59	끈풀린~비키니⊙글래머살짝	무선인터넷	(주)MEG	835889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0	비키니★가려도보이는~민망함	무선인터넷	(주)MEG	835890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1	하소연♥부푼가슴♥첫노출	무선인터넷	(주)MEG	835892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2	비키니속[므흣골반]묘~한노출	무선인터넷	(주)MEG	835893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3	화장실에서새신부랑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7005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4	옆방누나랑영화보다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7006	2008. 1.15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5	[가문의영광]며느리의정체는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1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6	[로마의휴일]그녀의진짜속마음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2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neg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8-567	[사랑과영혼]그녀의계	략!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3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세16679호
2008-568	[은밀한유혹]그녀의선	택은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4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69	◈그녀를믿지마세요!!	•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5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70	♥로맨틱♥사랑의인연	1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6	2008. 1.17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华
2008-571	데쓰노트의숨겨진비밑	<u>]</u> !!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7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72	두얼굴을가진★얼짱그	1녀★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8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H
2008-573	몸짱변신★수영장미팅	상사건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79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574	미녀가♥좋아하는♥님	ł자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80	2008. 1.17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2008.
2008-575	악마의유혹◈패션부♡	- 기자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81	2008. 1.16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1.29.
2008-576	채팅속☆그남자VS그억	여자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37082	2008. 1.17	선정성 자율표시	2008. 1.29	(왕원일)
※시이겨저	기과 · 저보토시으리의	 의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재정경제부고시제2008-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아 래-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 페 이 지	비 치 장 소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 구 ('05. 2.11)	www.haeundae.go.kr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05. 4.30)	www.wonju.go.kr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06. 3. 8)	www.gokseong.go.kr	곡성군청 지역개발사업단
함평 나비산업특구('06. 6.27)	www.hampyeong. jeonnam.kr	함평군청 건설교통과
화천 평화·생태특구('06.12.28)	www.ihc.go.kr	화천군청 문화관광과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28)	www.wonju.go.kr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안동 산약(마)마을특구('07. 4.27)	www.andong.go.kr	안동시청 농정과
고성 조선산업특구('07. 7.25)	www.goseong.go.kr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07.10.10)	www.seocheon.go.kr	서천군청 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

2007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7년 12월 28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 써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 별첨)

2007년 12월 26일 비엔나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합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1.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다
-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 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 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 이 2008년 1월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제안 예산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칸데 코엘 윰켈라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각하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제안 예산서

(2008.1.1 - 2008.12.31)

순	번	상 세 내 역	예산(미불)
		인건비	102,668
1		-대표	80,000
		-산업진흥관	22,668
2		프로젝트 사업비	32,000

순 번	상 세 내 역	예산(미불)
3	사업여행경비	22,000
4	워크샵/세미나	4,818
5	현지 구매	10,000
6	사무실 운영 경비	10,332
7	행정비용 (유엔공업개발기구 본부)	18,182
	총	US\$ 200,000

한국정부의 기여

2007년 12월 28일

각하,

본인은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2007년 12월 26일자 귀하의 각 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1.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 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 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유엔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 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 1일 에 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카데 코엨 육켘라

김성화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각하

Vienna, 26 December 2007

Si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on the UNIDO Service Project of 15 April 1987, as amended on 16 October 1989 and extended to 31 December 2007, be extend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1 January 2008 to 31 December 2008, under the following arrangements:

- 1. The Head of the Seoul 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 (ITPO Seoul),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UNIDO, shall direct the activities of ITPO Seoul.
- 2. The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eriod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itemized project budget, thereby replacing the indicative budget attached to the approved project document, dated 30 November 2005. The Head of ITPO Seoul will be appointed as a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and his/her salary wi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salary scale applicable to this category of staff and within the available budget allocation.
- 3. The activities of the ITPO Seoul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project document attached to the letter of Ms. Haruko Hirose, Managing Director, Programme Coordination and Field Operations Division, dated 30 November 2005.

His Excellency

Dr. Kandeh K. Yumkella

Director-General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DO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pursuit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ndate of ITPO Seou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UNIDO,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thereto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on this matte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08.

Please accept, Sir,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Enclosure: As stated

/Sgd./

Kim Sung-hw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PROPOSED BUDGET FOR ITPO SEOUL

(1 Jan. 2008-31 Dec. 2008)

No.	Details of Project	Budget(US\$)
	Personnel Expenses	102,668
1	-Head	80,000
	-National Expert	22,668
2	Delegate Programme	32,000
3	Project Travel	22,000
4	Workshop/seminars	4,818
5	Local Procurement	10,000
6	Operating expenses for office	10,332
7	Administrative support(UNIDO HQ)	18,182
	Total	US\$ 200,000

CONTRIBU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Office Space	KOICA		

28 December 2007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26 December 2007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 in Seoul, which reads as follow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on the UNIDO Service Project of 15 April 1987, as amended on 16 October 1989 and extended to 31 December 2007, be extend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1 January 2008 to 31 December 2008, under the following arrangements:

- 1. The Head of the Seoul 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 (ITPO Seoul),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UNIDO, shall direct the activities of ITPO Seoul.
- 2. The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eriod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itemized project budget, thereby replacing the indicative budget attached to the approved project document, dated 30 November 2005. The Head of ITPO Seoul will be appointed as a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and his/her salary wi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salary scale applicable to this category of staff and within the available budget allocation.
- 3. The activities of the ITPO Seoul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project document attached to the letter of Ms. Haruko Hirose, Managing Director, Programme Coordination and Field Operations Division, dated 30 November 2005.

His Excellency

Mr. Kim Sung-hw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DO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pursuit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andate of ITPO Seou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UNIDO,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thereto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on this matte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08.

Please accept, Sir,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UNIDO the foregoing arrangements and to agree that your Excellency's letter and this letter shall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UNIDO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08.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gd./

Kandeh K. Yumkella

⊙산업자원부고시제2008-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4호(2007. 4. 2.)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4호(2007. 4. 2.)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제8호나목중 "규칙 제46조제4항"을 "법 제2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0호중 "제2007-46호"를 "제2008-11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급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5톤이하	11만8천원	8만4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6만원	11만3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20만1천원	13만2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9만5천원	19만1천원
액화가스의제조 (충전·저장)시설	50톤초과 100톤이하	40만6천원	25만4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69만원	45만7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98만7천원	69만9천원
	1천톤초과	98만7천원에 1천톤을 초 과한 500톤마다 13만6천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48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69만9천원에 1천톤을 초 과한 500톤마다 11만7천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1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1천㎡이하	13만9천원	10만2천원
	1천㎡초과 2천㎡이하	24만2천원	15만5천원
압축가스의제조	2천㎡초과 3천㎡이하	30만6천원	18만9천원
(충전·저장)시설	3천㎡초과 5천㎡이하	35만7천원	23만원
	5천㎡초과 1만㎡이하	60만9천원	44만원
	1만m³초과 10만m³이하	99만9천원	68만1천원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10만m³초과 20만m³이하	136만7천원	114만8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75만9천원	153만원
압축가스의제조 (충전 · 저장)시설	50만㎡초과 100만㎡이하	221만7천원	207만4천원
	100만㎡초과	221만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2만 6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만, 34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7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1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만, 23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톤이하	3만4천원	2만2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6만3천원	4만원
	10톤초과 30톤이하	11만9천원	8만1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15만7천원	11만5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6만8천원	19만1천원
냉동제조 시설	100톤초과 200톤이하	41만4천원	27만2천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50만8천원	35만5천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70만5천원	51만원
	500톤초과	70만5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2만6천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3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51만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19만원을초과 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설	널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明	관	연장 1km이하	14만7천원		
		연장 1km초과 2km이하	27만5천원		
		연장 2km초과 3km이하	40만1천원		
		연장 3km초과 4km이하	52만9천원		
		연장 4km초과 5km이하	65만8천원		
		연장 5km초과	65만8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5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 매 시 설		9만2천원	-	
	고압	가스수입업시설	9만2천원	7만2천원	
F		저장능력 100㎏이하	2만1천원	1만7천원	
특 정 고	액	저장능력 100kg초과 300kg이하	2만4천원	2만원	
압 가	압화	저장능력 300kg초과 500kg이하	3만6천원	2만8천원	
스 사 용 시 설	가 스	저장능력 500kg초과	3만6천원에 500kg을 초과한 100kg마다 1천6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한 100kg마다 1천5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대 상		상	금	액
시 설	보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저장능력 300㎡이하	2만1천원	1만7천원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2만4천원	2만원
특 정	압 축 가 스	저장능력 500㎡초과 1천㎡이하	3만6천원	2만8천원
고 압 가 스 사	° 고 압 가 스	저장능력 1천㎡초과	3만6천원에 1천㎡를 초 과한 100㎡마다 1천6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2만8천원에 1천㎡를 초 과한 100㎡마다 1천5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용 시	차 량	용기수용적 300 <i>l</i> 이하	3만2천원	_
설		용기수용적 300l 초과 500l 이하	5만원	_
		용기수용적 500l 초과	6만5천원	-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 속 충 전 설 비		2만1천원	1만7천원
8	용기제조시설		33만6천원	
냉동기제조시설		조 시 설	33만6천원	
与	특 정 설 비 제 조 시 설		33만6천원	

2. 중간검사 수수료				
대	상	급 액		
시 설 별	제조(충전 · 저장)능력	П -1		
	5톤이하	7만원		
	5톤초과 10톤이하	9만3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0만9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15만3천원		
액화가스의 제조	50톤초과 100톤이하	21만2천원		
(충전·저장)시설	100톤초과 500톤이하	36만6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52만5천원		
	1천톤초과	52만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7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천m³이하	8만2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2만9천원		
	2천㎡초과 3천㎡이하	14만9천원		
	3천㎡초과 5천㎡이하	18만3천원		
	5천㎡초과 1만㎡이하	30만5천원		
압축가스의 제조	1만㎡초과 10만㎡이하	50만5천원		
(충전·저장)시설	10만㎡초과 20만㎡이하	72만1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90만6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26만9천원		
	100만㎡초과	126만9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6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ما ا
시 설 별	제조(충전 · 저장)능력	- 금 액
	5톤이하	1만9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3만4천원
	10톤초과 30톤이하	6만7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9만5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15만원
냉동제조 시 설	100톤초과 200톤이하	22만5천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29만7천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40만9천원
	500톤초과	40만9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6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8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1km이하	9만7천원
	연장 1km초과 2km이하	16만8천원
	연장 2km초과 3km이하	23만9천원
배 관	연장 3km초과 4km이하	30만1천원
	연장 4km초과 5km이하	37만2천원
	연장 5km초과	37만2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 1 km마다 2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5만1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시설	수입업시설마다	5만1천원

3. 용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급	액	
시 설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신 규 검 사	재 검 사	
이음매없는	50 미만	540원	510원	
용기	51 이상 951 미만	1천180원	2천120원	
	10kg미만	510원	570원	
	10kg이상 20kg미만	660원	940원	
액화석유	20kg이상 50kg미만	740원	1천190원	
가스용기 	50kg이상 100kg미만	1천280원	1천490원	
	자동차용 용기	1천580원	_	
	복합용기	1천580원	2천430원	
아세틸렌	5kg미만	1천210원	1천280원	
용기	5kg이상 10kg미만	1천500원	1천620원	
	50kg미만	9천300원	1만200원	
초저온용기	50kg이상 70kg미만	1만1천700원	1만2천200원	
	70kg이상 150kg미만	1만6천100원	1만7천500원	
	150kg이상 240kg미만	2만600원	2만5천400원	
	240kg이상 1천kg미만	2만9천900원	3만2천700원	
	1천kg이상 2천kg미만	6만2천800원	4만5천300원	

대 상		금	액	
시 설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신 규 검 사	재 검 사
초저온용기	2천kg이상		6만2천800원에 2천kg 을 초과한 1천kg마다 1만4천9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0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5천300원에 2천kg 을 초과한 1천kg마다 1 만4천9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0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1만6천원	_
납붙임용기	615㎝*미만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3만1천원	_
및접합 용 기	615cm°이상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2만1천원	_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4만1천원	_
	1조를 [†] 1천개이	형성 하는수 하	1조마다 1만9천원	_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용접용기		형성 하는수 과 2천개이하	1조마다 3만6천원	_
0 Н 0 / 1	1조를 형성 하는 수 2천개초과 3천개이하		1조마다 5만4천원	-
재 충 전 금지용기	20kg 🗆] 1	간	690원	_
	20kg°]/	상 40kg미만	780원	_
일 반 복합용기	50 미만		2천100원	2천300원
	51 이상 801 미만		4천200원	4천600원
	801 이상		9천500원	1만400원

대	상		급	액
용 기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신 규	검 사	재 검 사
압축천연	압축천연 100미만		5천500원	1만1천원
가스자동차	100이상 150미만		1만원	1만5천원
연료용용기 -	150이상 200미만		1만5천원	2만원
	200이상		3만원	3만5천원
	10kg미만		450원	570원
	10kg이상 20kg미만		720원	980원
	20kg이상 40kg미만		820원	1천270원
	40kg이상 50kg미만		1천240원	1천600원
	50kg이상 70kg미만		1천600원	1천800원
	70kg이상 150kg미만		2천100원	2천200원
그밖의용기 -	150kg이상 240kg미만	1	만3천810원	2만4천300원
	240kg이상 1천kg미만	1	.만9천710원	3만1천600원
	1천kg이상 2천kg미만	Ē	5만7천440원	4만3천200원
	2천kg이상	5만7천440원이 과한 1천kg마디 가산한 금액. 원을 초과할 수	다 1만5천원을 다만, 291만	4만3천200원에 2천kg을 초과한 1천kg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9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기기기기	신규제조	변경	
	· 기정밀검사	170만7천원	84만3천원	_
	0 키 비 소 프	정밀검사	제품검사	재 검 사
	용기부속품	24만7천원	120원	140원

4. 특정설비검사 수수료									
ц	상 상				금	-	액		
특정설비별	ਜ	격	신	7	검	사	재	검	사
	내용적1천ℓ 이하				3만3	3천원		2	만2천원
	내용적1천ℓ 초과	5천ℓ 이하			6만3	3천원			4만원
저장탱크 및 차	내용적5천ℓ 초과	1만ℓ 이하		1	.0만9)천원			7만원
량에고정된탱크 (ISO탱크컨테이	내용적1만ℓ 초과	2만ℓ 이하		2	0만8	3천원		15	5만3천원
너)	내용적2만ℓ 초과	5만ℓ 이하		3	31만4	천원			22만원
	내용적5만ℓ 초과		초과한 2천원을	1만의 을 가 306민	(마· 산한 }원을	가 7만 금액.	한 1만 <i>l</i> 을 가산학	마다 한 금	(를 초과 4만7천원 액. 다만, 스과할 수
	내용적1천ℓ 이하				3만3	3천원		2	만2천원
	내용적1천ℓ 초과	5천ℓ 이하			6만3	3천원			4만원
	내용적5천ℓ 초과	1만ℓ 이하		1	.0만9)천원			7만원
압력용기	내용적1만ℓ 초과	2만ℓ 이하		2	0만8	3천원		15	5만3천원
	내용적2만ℓ 초과	5만ℓ 이하		3	31만4	천원			22만원
	내용적5만ℓ 초과		초과한 2천원을	1만의 을 가 306민	(마r 산한 }원을	가 7만 금액.	한 1만l 을 가산한	마다 } 금약	ℓ 를 초과 4만7천원 낵. 을 초과할

Ľ	대 상		ज़े
특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기화능력 30kg/h이하	9천원	7천원
	기화능력 30kg/h초과 50kg/h이하	1만2천원	1만원
	기화능력 50kg/h초과 200kg/h이하	1만3천원	1만2천원
기화장치	기화능력 200kg/h초과 500kg/h이하	1만6천원	1만4천원
	기화능력 500kg/h초과	1만6천원에 500kg/h 를 초과한 1천kg/h마 다 8천900원을 가산 한 금액. 다만, 134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6천원을 가산한 금 액. 다만, 94만원을 초
	호칭지름 8A이하	410원	230원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940원	64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1천500원	1천5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2천420원	1천80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3천690원	2천900원
안전밸브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5천690원	4천500원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 하	8천850원	7천200원
	호칭지름 200A초과	8천85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1 천700원을 가산한 금 액. 다만, 8만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7천20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1천 700원을 가산한 금액 . 다만, 4만2천원을 초 과할 수 없다.
특정고역	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18만	3천원

대		상	금	ज्	
특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호	칭지름 25A이하	5천500원	3천900원	
		칭지름 25A초과)A이하	5천800원	4천100원	
긴급차단		칭지름 50A초과)A이하	6천900원	5천60원	
장 치	<u>ই</u>	칭지름 80A초과	6천900원에 80A를 초과 한 25A마다 1천6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5천60원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천300원을 가산 한 금액. 다만, 8천4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	밀검사			
		호칭지름 25A이하	770원		
독 성 가 스 배관용밸브	제 품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900원		
	검 사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1천500)원	
		호칭지름 100A초과	4 천	년원	
자동차용	암	카플러	740)원	
가스자동 주 입 기	숫	카플러	100)원	
역 화	역 화 방 지 장 치		400)원	
자동차용압축가		정밀검사	51만6천	<u>년</u> 원	
스 완속충전설비		제품검사	15만1천원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 수 장 치		제품검사	13만4천원		

	Ľ	생 상	급 액		
특	정설비별	규 격	신 규 검 사 재 검 사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압축기 -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냉	응축기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 중품기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_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동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만8천원		
설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만원		
	증발기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만2천원		
비비	6 린기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5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6천원		
		내용적 500 미만	6천300원		
		내용적 500 이상 1000 미만	1만4천원		
	압 력 용기류	내용적 100ℓ 이상 200ℓ 미만	2만1천원		
		내용적 200ℓ 이상 1천ℓ 미만	2만3천원		
		내용적 1천ℓ 이상	2만3천원에 1천 를 초과한 1천 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설계검토	11만4천원		

5 냉동기 검사수수료

5. 냉동기 검사구구표					
	대	상	금	액	
가스히트펌프냉		정 밀 검 사	72만9천원		
난 방 기		제 품 검 사	13만2	천원	
		냉동능력 5톤미만	11	만원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1만2	천원	
	제품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1만4	천원	
그밖의 냉동기	검사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만7	천원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만1	천원	
		냉동능력 100톤이상	5만5	천원	

6.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급	액	
78	신	규	변	경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30만6천원		23만5천원
고 압 가 스 일 반 제 조 시 설		21만1천원		16만2천원
고 압 가 스 충 전 시 설		21만1천원		16만2천원
냉동제조시설		14만7천원		11만3천원
고 압 가 스 저 장 시 설		6만6천원		5만3천원
판 매 시 설		4만3천원		3만4천원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시설		16만4천원		12만6천원

7.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대 상	급	액
	납사분해시설		77만원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중질유분해시설	71	만5천원
국 경 세 조 시 설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63	3만3천원
,	기타시설		55만원

비고: 대상시설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55만원으로 한다.

8. 정밀안전 검진수수료

정밀안전검진 수수료는 여비, 숙식비, 인쇄비, 장비사용료 등의 직접경비(340만원으로 한다)에 별표1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 교육비

	대 상	الم ما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금 액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5만2천원
	(2)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5만2천원
	(3)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 기관 기술인력	15만2천원
	(4)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 사기관 기술인력	15만2천원
가. 전문교육	(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5만2천원
	(6)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15만2천원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4만6천원
	(8) 운반책임자	9만8천원
	(9)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	8만2천원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1만7천원
一 年 三 五 年	(2)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	1만6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 가 정한다.

10.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1만원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무중 "제37조"을 "제41조"으로 한다

제4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제5호다목 (3) (가)중 "188만9천원"을 "223만원"으로 하고, (나)의 "283만4천원"을 "334만원"으로 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5톤이하	14만9천원	9만9천원
	5톤초과	22만3천원	13만7천원
	10톤이하	22 00 0 0	100100
	10톤초과	28만2천원	15만6천원
	20톤이하	20 단2 전 단	10000 8
	20톤초과	36만5천원	21만3천원
	50톤이하	50 단 5 전 단	21 전 6건 전
액화석유 가스의	50톤초과	47만4천원	27만4천원
충전 · 집단공급	100톤이하	710700	21 64 6
· 저장소시설	100톤초과	79만7천원	48만2천원
	500톤이하	700700	40 t/2 t/t/
	500톤초과	117만4천원	72만원
	1천톤이하	111010	1200
	1천톤초과	117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	72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한 500톤 마다 17만9천원을	500톤 마다 10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7만1	가산한 금액. 다만, 152만
		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8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12만3천원	8만4천원
가스 용품		33만6천원	
제조시설		55년0선년	_

11100103				2000. 1.20. (-)
I	대	Å-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다	방	2만원	1만3천원
	ਤੀ ਹੀ-	구조변경	1만5천원	_
	차 량	신규제작	19만5천원	_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저장능력 100k	g이하	2만원	1만3천원
	저장능력 100kg초과 300kg이하		2만4천원	1만6천원
	저장능력 300k 500kg이하	g초과	3만8천원	2만5천원
	저장능력 500kg초과		과한 100kg 마다 2천3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만5천원에 500kg을 초 과한 100kg 마다 2천20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1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2. 중간검사 수수료〈삭제〉

세10079모	· · · · · · · · · · · · · · · · · · ·	2008. 1.29. (외요일)
. 가스용품 생산단계?		
	대 상 -	금 액
	조정능력 5kg/h이하	150원
	조정능력 5kg/h초과 10kg/h이하	780원
	조정능력 10kg/h초과 15kg/h이하	1천430원
압 력 조 정 기 (액화석유가스용)	조정능력 15kg/h초과 30kg/h이하	2천260원
	조정능력 30kg/h초과 100kg/h이하	3천630원
	조정능력 100kg/h초과 300kg/h이하	4천800원
	조정능력 300kg/h초과	5천800원
	조정능력 50㎡/h이하	1천원
	조정능력 50㎡/h초과 100㎡/h이하	1천500원
압 력 조 정 기 (도시가스용)	조정능력 100㎡/h초과 150㎡/h이하	2천500원
	조정능력 150㎡/h초과 300㎡/h이하	3천680원
	조정능력 300㎡/h초과	9천600원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1000㎡/h이하	1만원
(정압기용)	조정능력 1000㎡/h초과 3000㎡/h이하	1만5천원
	조정능력 3000㎡/h초과 6000㎡/h이하	2만원
	조정능력 6000㎡/h초과	2만6천원
압력조정기(엘피지자-	 동차용)	750원
	규격 G2.0이하	3천900원
정압기용필터	규격 G2.0초과 G4.0이하	7천900원
	규격 G4.0초과 또는 입구압력이 1MPa초과인 필터	1만6천800원

71100131		
	대 상	금 액
	호칭지름 8A이하	130원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19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24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32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410원
배관용밸브 (나사형)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670원
	호칭지름 80A초과 100A이하	970원
	호칭지름 100A초과 125A이하	1천600원
	호칭지름 125A초과 150A이하	2천420원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4천100원
	호칭지름 200A초과	5천300원
	호칭지름 100A이하	2천440원
	호칭지름 100A초과 150A이하	4천830원
배관용밸브 (매몰용접형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6천830원
볼밸브,PE 밸브)	호칭지름 200A초과 300A이하	1만2천500원
	호칭지름 300A초과 500A이하	1만6천500원
	호칭지름 500A초과	2만6천500원

	대	상	급 액	
	· ·			
	호칭지름 50A°	° r	1천원	
	호칭지름 50A초	르과 100A이하	1천730원	
배 관 용 밸 브	호칭지름 100A	초과 150A이하	2천880원	
(용접형, 플랜지형,	호칭지름 150A	 초과 200A이하	5천500원	
기타)	호칭지름 200A	초과 300A이하	8천500원	
	호칭지름 300A.	초과 500A이하	1만6천500원	
	호칭지름 500A	초과	2만6천500원	
		호칭지름 50A이하	1천원	
	전기절연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1천370원	
	이 음 관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2천300원	
		호칭지름 200A초과	8천400원	
		호칭지름 25A이하	50원	
	전기융착식	호칭지름 25A초과 100A이하	90원	
배 관 이 음 관	폴리에틸렌이 음 관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370원	
		호칭지름 200A초과	690원	
		호칭지름 25A이하	60원	
	이 형 질	호칭지름 25A초과 100A이하	100원	
	이 음 관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550원	
		호칭지름 200A초과	1천200원	
	퀵 카 플 러	1	60원	
	세이프티커플링		1천900원	

	대	상	급 액
	호 스 콕		50원
	퓨 즈 콕		110원
콕	상 자 콕		360원
	노 즐 콕		40원
	저 압 호 스		100m마다 960원
		측 도 관	70원
	고 압 고 무 호 스	투 윈 호 스	130원
		자 동 차 용	70원
호스	엘피지자동차용비금속호스		200원
	금속플랙시블 호 스	길이 3m이하	50원
		길이 3m초과	150원에 길이 3m를 초과한 매3m마다 50원을 가산한 금 액
	호칭지름 25A이하		43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700원
가스누출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1천원
자 동 차단장치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1천530원
	호칭지름 80A초과 100A이하		2천120원
	호칭지름 100A초과		2천600원
다기능가	스 안 전 계 량 기		1천500원
로 딩 암			2만3천100원

	대	상	급 액
		1 버 너	330원
	기 & 레 기 근	2 버 너	580원
	가스렌지류	3 버 너	1천160원
		4 버 너 이 상	1천300원
		1 열 버 너	70원
	ᄌᄆᅄᄾᆌ	2 열 버 너	140원
연	주물연소기	3 열 버 너 이 상	230원
		주물형 연소기	330원
소	이 동 식	1 버 너	310원
	부탄연소기	2 버 너 이 상	450원
7]		가스소비량 1만kml/h이하	4천원
		가스소비량 1만kcd/h초과 1만5천kcd/h이하	6천100원
	온수보일러 · 냉난방기 ·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가스소비량 1만5천kml/h초과 2만kml/h이하	8천700원
	및 식품제조용 연 소 기	가스소비량 2만kcal/h초과 3만kcal/h이하	1만원
		가스소비량 3만kml/h초과 5만kml/h이하	1만3천원
		가스소비량 5만kcd/h초과 10만kcd/h이하	1만8천원

	대	상	급	액
		가스소비량 10만kml/h초과 20만kml/h이하	2만6천	선원
		가스소비량 20만kml/h초과 30만kml/h이하	3만5천	천원
	온수보일러 · 냉 난방기 · 강제혼	가스소비량 30만kml/h초과 50만kml/h이하	4만6천	선원
	합식 가스버너 및 식품제조용	가스소비량 50만kml/h초과 70만kml/h이하	5만7천	선원
	연 소 기	가스소비량 70만kml/h초과 100만kml/h이하	7만4천	선원
연		가스소비량 100만kal/h초과 200만kal/h이하	95	<u></u> 만원
소		가스소비량 200만kol/h초과	10만8취	선원
		가스소비량 1만kcd/h이하	3천30	0원
기	カルムの入っ	가스소비량 1만kcd/h초과 1만5천kcd/h이하	4₹	선원
	<u>가스온수기</u>	가스소비량 1만5천kad/h초과 2만kad/h이하	6천10	0원
		가스소비량 2만kcd/h초과	7천30	0원
		가스소비량 2천kml/h이하	74	0원
		가스소비량 2천kml/h이하	74	0원
	업 무 용 대형연소기	가스소비량 2천kcd/h초과 3천kcd/h이하	1천40	0원
		가스소비량 3천kml/h초과 5천kml/h이하	2천50	0원

	대	상	금 액
		가스소비량 5천kml/h초과 1만kml/h이하	3천800원
	업 무 용	가스소비량 1만kod/h초과 1만5천kod/h이하	6천200원
	대형연소기	가스소비량 1만5천kod/h초과 2만kod/h이하	8천700원
		가스소비량 2만kod/h초과	1만1천900원
연		가스소비량 2천kad/h이하	760원
소		가스소비량 2천kod/h초과 3천kod/h이하	1천260원
7]		가스소비량 3천kod/h초과 5천kod/h이하	2천600원
	기타연소기	가스소비량 5천kod/h초과 1만kod/h이하	4천원
		가스소비량 1만kod/h초과 1만5천kod/h이하	6천500원
		가스소비량 1만5천kod/h초과 2만kod/h이하	9천100원
		가스소비량 2만kol/h초과	1만2천400원
J. 1	밖 의 가 스 용 품		출고가격의 1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

4.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압 력 조 정 기 류			4	4만9천원
배 관 용	밸 브		3	37만4천원
배 관 이	음 관·정 압 기 용	필 터	3	37만4천원
콕			3	19만3천원
호스류	·로 딩 암·세 이 프	티커 플 링	3	39만9천원
가 스 누	출자동차단장치	l·다 기 능 가 스 안 전 계 량 기	5	53만2천원
	기 시 레 기 근	1 버 너	4	4만3천원
	가스렌지류	2 버 너 이 상	5	50만5천원
	주물연소기		2	9만7천원
연	이동식부탄연소기투	<u>.</u>	4	5만9천원
소	온수보일러, 냉난병 조용 연소기	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및 식품제	6	3만1천원
	가스온수기		5	50만7천원
7]	기 오븐 · 그릴		3	88만5천원
	오븐렌지·가스난병	[·7]	5	55만3천원
	업무용대형연소기		2	27만4천원
	그밖의 연소기류		4	3만7천원

비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비용은 유사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5.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급	액	
		규	변	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8만5천원		6만6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시설		6만7천원		5만4천원
집단공급시설		6만7천원		5만4천원
판 매 시 설		4만3천원		3만4천원
가스 용품 제조시설		16만4천원		12만6천원

6.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교육비

	대 상	الم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금 액
	(1)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 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15만2천원
	(2)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원	14만6천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영업소의 안전관리책임 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기술인력	15만2천원
가. 전문교육	(4)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4만6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 자	15만2천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14만6천원
	(7)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9만8천원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운전자	1만500원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운전자	1만7천원
나. 특별교육	(3) 액화석유가스배달원	1만7천원
	(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1만7천원
	(5)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정비·폐차업소 종사자	1만7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6호(2007. 4. 2.)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6호(2007. 4. 2.)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급	액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7	71만1천원
제 조	全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40만6천	
공 급	소		1	.7만7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	.3만5천원
정 압 기			6만5천원	
	연장이 2kmㅁ]만		3만7천원
배	연장이 2km이상 5km미만			7만8천원
관	연장이 5km이상 10km미만 과		1	.3만6천원
L.	연장이 10km	이상	13만6천원에 10km를 초고 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الا الا		급	액	
대 상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월사용예정량이 1천m³이히		5만원	2만3	3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괴		5만원	опьс	3천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m³이히		9인전	5년(O신전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괴	5만원에 4	4천㎡를 초과한 500	3만8천원에	4천㎡를 초과한
들시 중에 성성의 4선 m 조모	m³마다 7천	천400원을 가산한 금	500㎡마다 7천	1200원을 가산한
	액. 다만,	84만3천원을 초과할	금액. 다만, 3	1만6천원을 초과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시자가 지정하는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7 11		금	액	
구 분	신	규	변	경
가스도매 사업시설		34만3천원		26만3천원
일반도시가스 사업시설		24만7천원		19만원

4. 〈삭제〉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 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0만원/km으로 한다.

-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 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180만9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90만2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62만8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20만5천원

7. 교육비

	대 상	- al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급 액		
가. 전문교육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 리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 술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 관리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14만6천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3만9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1만7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 1. 사업의 명칭: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건설공사
-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2-3번지
- 5. 사업시행기간: 2008년 1 월~2009년12월
-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E	번 . , , ,				지	적(m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호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ا ا			٦	면적	한 H 전 역	(명칭)	十 工	(명칭)	十 工 4	9170		
		인천광역시										
	1	중구 신흥	62-3 집	잡 49	49,587	5,578.29	5 578 29 삼얏웩푸드	인천광역시 중구				
	•	동3가		Ü		10,001	0,010.20	0.061-	신흥동3가 62-3			
		0 0, 1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 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율	대 표	국고채수익률	대 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2.625미만	2.50	2.50 6.375이상~6.625미만	
2.625이상~2.875미만	2.75	6.625이상~6.875미만	6.75
2.875이상~3.125미만	3.00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이상~3.375미만	3.25	7.125이상~7.375미만	7.25
3.375이상~3.625미만	3.50	7.375이상~7.625미만	7.50
3.625이상~3.875미만	3.75	7.625이상~7.875미만	7.75

국고채수익율	대 표	국고채수익률	대 표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한단계 8 년)	게걸다기	(0011102)	게걸다기
3.875이상~4.125미만	4.00	7.875이상~8.125미만	8.00
4.125이상~4.375미만	4.25	8.125이상~8.375미만	8.25
4.375이상~4.625미만	4.50	8.375이상~8.625미만	8.50
4.625이상~4.875미만	4.75	8.625이상~8.875미만	8.75
4.875이상~5.125미만	5.00	8.875이상~9.125미만	9.00
5.125이상~5.375미만	5.25	9.125이상~9.375미만	9.25
5.375이상~5.625미만	5.50	9.375이상~9.625미만	9.50
5.625이상~5.875미만	5.75	9.625이상~9.875미만	9.75
5.875이상~6.125미만	6.00	9.875이상	10.00
6.125이상~6.375미만	6.25		

-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 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한다.
 -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75%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대출받는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5.25%에서 최고 8.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4) D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0.75%P를 뺀 값으로 한다.
 - (5) E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2.75%p를 뺀 값으로 하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중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5%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E군에 한해서 대표대출금리가 4.25%p이하일 경우 4.25%를 적용한다.

군별	사	업	명	
٨٦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된	 관건설, 집단에너지	공급, 석·골재산업,	송유관진입도로
A군	건설			
B군	국내외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	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가	발, 대체산업창
DT	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신용대출	을 제외한다), 투자	위험 보증사업	
C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다	- 귀출(에너지절약시설	널 설치), 가스안전관리	기사업 신용대출
D군	기술담보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및 신·재생에너지호	보급)	
E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	기업 투자사업 신용	용대출 및 기술담보대	출을 제외한다)

2 대출수수료

- 가. LNG공급기반구축,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유관진입도로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 나,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의 대출수수료는 1.5%로 한다.
-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의 대출수수료를 4.0%로 한다.
- 마. 유전개발 탐사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 2.75% 및 2.5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각각 0.75%, 0.50% 및 0.2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 가. 기술담보 대출,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 할상환으로 한다.
-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바이오 및 폐기물부문에 한한다), 석·골재산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 다.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은 제외한다), 송유관진입도로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 기사업은 제외)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 마. 집단에너지공급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 바.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 아. 해외자원개발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5. 융자비율

-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 나.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다 기타 대출자금의 융자비윸은 100% 이내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별표2」의 1호 "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14.)를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2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36호, 2006, 9,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 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 다.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말한다.
- 제3조(제조방법) ①먹는샘물의 제조는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및 자외선(紫外線)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 는 아니된다.
 - ②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는 있되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던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농도는 0.1% 미만이어야한다

제4조(보존방법) 먹는샘물은 가급적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용기) ①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2**(용기의 관리)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 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먹는샘물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 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3(취수정 등의 살균·소독) 샘물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제 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의 회수 · 처리) 삭제

제7조(표시기준) 삭제

- 제8조(유통기한) ①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 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
 -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 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수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0 이상
 -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

- ③먹는샘물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 ④제1항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⑤법 제43조에 의한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먹는샘물의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질기 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검체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의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 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 삭제

제12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 ·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13조(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목명
- 2. 제품명
- 3. 원수원 및 수원지
- 4. 업소명 및 소재지
- 5. 유통기한
-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 7. 내용량
- 8. 무기물질함량
-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제13조제2호와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다 다만,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 판매하는 먹는색 물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수워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와 폭"을 말하다)로 하여 시ㆍ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ㆍ돗」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 판매하는 먹는샘물은 주 표시면에 수워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다
-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워지 하단에 수워지 확자크기의 1/3 이삿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 1. 재활용하는 100 이상 용기의 수워지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 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참고사항〉

제9조제2항 〈삭제〉 먹는샘물의 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집곳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7-118호)에 규정

별표1 〈삭제〉증 먹는샘물의 수집기준은 먹는물수집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에 규 젓

별표1 〈삭제〉중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에 규 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 별지 제2호의2 서식 에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제16조 관련)

- 1. 품목명
 - 가. 「먹는샘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품명
 - 가.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명칭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 가 없도록 상호 · 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워수워 및 수워지

- 가.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수원지는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4. 업소명 및 소재지
 - 가. 제12조제1호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나.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은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별도의 구획된 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 5. 유통기한
 -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 가. 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내용량
 -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l 또는 ml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이어야 한다.
- 8. 보관상 주의사항
 -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나. 100 이상의 용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9. 반품 및 교환
 - 가,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10. 처리방법
 - 가, 오존처리한 제품은 「오존처리」라고 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11. 무기물질 함량
 - 가. 먹는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이하 "칼슘 등"이라 한다)의 함량을 mg/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칼슘 등 함량표시는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기할 수 있다.
- 12. 표시금지
 - 가. 오존처리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 나. 모든 먹는샘물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표시 예〉

주 표시면

20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샊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제조원 ○○샘물(주) 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품목명: 먹는샘물

○용 량: 2.0ℓ

○원수원: 지하수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제조업소명: ○○먹는샘물(주) (☎02-2110-6768)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유통기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무기물질함량: 칼슘(Ca): ○○mg/l ~ ○○mg/l

나트륨(Na): ○ ○ mg/l ~ ○ ○ mg/l

칼륨(K): O O mg/l ~ O O mg/l

마그네슘(Mg): O O mg/l ~ O O mg/l

불소(F): $\bigcirc \bigcirc mg/\ell$ $\sim \bigcirc \bigcirc mg/\ell$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경기북부허가 제1호

○보관상의 주의사항: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반품 또는 교환 : 본사 또는 판매점(☎ 02-2110-6768)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벽표 3〉

검체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1. 검체의 채취방법

가, 일반사항

- 1)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하여 수거
- 2) 검사대상 검체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
- 3)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등이 동일한 검체를 채취

나. 샘물원수 검체 채취방법

- 1) 화염으로 배수관의 검체채취구를 소독함.
- 2) 채수에 앞서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
- 3) 채수가 끝나면 검체병은 마개로 단단하게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 4) 멸균이 되지 않는 마개는 사용하지 말 것.

2. 취급상 주의사항

- 1) 제품명 및 제품유형 등을 수거증에 정확히 기재
- 2) 미생물 분야 검사를 요하는 검체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무균운반기에 넣어 5℃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4시간 이내에 운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수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검사의뢰
- 4)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접촉하여 2 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 :	사업장등록번호 :					
① 신 청 인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② 연 장 기 한	제조일로부터 월(년)						
③ 허가·등록일							
[머니므코리바 케96로 미[머니셰므이 키즈코 그거 미 교기키즈 크기 케이로케9참세 마리 이							

「먹는물관리법」제36조 및「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제조업체(수입업체포함)의 원수, 제품수 수질검사성적서
-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3. 수질검사용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 5.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또는 먹는샘물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0 이상의 시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먹는샘물 유통기	한 연장승인서	
사업장명 :		사업장등록번호 :	
대 표 자 :	,	뱅 년 월 일 :	
소 재 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월(년)		
승인조건 :			
「먹는물관리법」제36조 및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환 경 부 장 관 (인)

●환경부고시제2008-13호

먹는물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4-40호, 2004, 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화 경 부 장 관

지하수 과려 정무기과 지정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 주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 다
- **제4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
 -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 ·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록·저장
 - 2. 측정자료의 분석
 - 가.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 나.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 다.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
 - 라. 취수정과 감시정간의 상관관계 분석
- 3. 시스템 관리
 - 가. 취수정 및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나 취수정 및 감시정 수집 · 수량 측정자료의 정송 및 분석장치의 유지 · 보수

- 다. 자동계측, 전송 및 분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연구 · 보급
- 라 자동계측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시험규격 설정
- **제5조**(자료의 보고) ①전문기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호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사항)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의 보관
 -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5년이상
 -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
- 2 자동계측기 등 수집 · 수량 측정 및 전송장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 ②전문기관은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중 수질·수량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이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5호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4-1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사기준"으로 하다

환 경 부 장 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 **제1조** 중 "제8조별표4제7호다목(1)(가)"를 "제14조별표5제5호다목 1)가)"로 하고, "감염성폐기물" 음 "의료폐기묵"로 하다

제2조. 제3조 중 "감염성폐기뭄"을 "의료폐기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워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표차종선정기준(제2조 관련)

- 1. 차체 형식: 해당차종의 다양한 차체 형식(설론, 쿠페, 컨버터블, 스테이션 웨건 등) 중에서 차체 중량이 가장 가벼운 차체를 선정한다.
- 2. 배기량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중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배기량을 선정하다
- 3. 엔진: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점화방식인 불꽃점화와 압축착화 방식중에서 중량이 적은 불꽃점화 방식의 엔진을 선정하고, 불꽃점화 방식에 여러 엔진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은 엔진을 선정한다.

- 4. 변속기: 변속기는 변속기의 단수가 같을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수동변속기를 선정하고, 변속기의 단수가 다를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변속기를 선정한다.
- 5. 활축의 개수/위치 : 활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구동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구동을 선택하고, 전류 및 후류이 같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은 전류구동을 선정한다.
- 6. 조향차축의 개수/위치 : 조향차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조향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조향을 선정한다.
- 7. 사양 등급 : 에어백, 램프류, 고급 시트커버 등과 같이 플라스틱 내외장 사양이 많이 적용된 고급 사양의 등급을 선정한다.
- 8. 선택사양(옵션) : 제7호에 의해 선정된 고급 사양 등급에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선택사양(옵션) 이 장착된 차종을 선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7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전기 · 전자제품의 재질 · 구조개선지침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전기·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 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 ②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질·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한국전자 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
 - ⑦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재질·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11.26 및 산업자원부고시 2004-116호, 2004.11.2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재진	. 구조개서사하	평가기준(제5조제1항	ΠĴ	제9하 3	과려)
/\lambda	1 44/11/21/11/8	- ダイ 1 / 1 注 1 / 1 1 プー/11 ま な .	~	711476	テーデー

		선사항 평가기순(제5소제1항 및 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 평 가 기 준						
	가. 재질 종류의 단순 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재질수를 단순화 한 정도						
1. 재질개선		재활용가능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와 기구·부품의 PVC 사용 량 억제 정도						
	다. 재질기호 표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여부						
	라. 재활용원료의 사 용	재활용원료의 사용량 증가 정도						
	가. 분리의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의 분리 용이성						
	나. 해체의 용이성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개선 정도						
	다. 단일재질 사용구 조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정도						
2. 구조개선	라. 제품의 감량화	사용원재료의 감량화 정도 ※포장재 중량 제외						
	마. 제품의 소형화	제품의 소형화 정도 ※부피(cm³) : W(너비)×D(길이)×H(높이)						
		1) 포장재의 중량비						
	바. 포장재의 감량화	2) 포장재 감량화 정도						
	가. 사전평가의 기 록·보존	사전평가사항의 기록 및 보존여부						
	나.재활용정보 제공	재활용정보의 제공여부						
3 기타	다.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라. 재활용촉진을 위 한 기술개발 노력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여부						
	마. 환경부하를 고려 한 제품 생산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고려한 제품의 생산 여부						

[별지	서식]								
			재질・-	구조개선시	사항평/	가서			
	상 호					법인등록법	번호		
업체 정보	주 소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u>Ā</u>		
				평7	가모델				
	제품 사진	제품종류							
제품 정보		모델명				출고일자			
		용량(규격)			'				
		평가일자							
	①평가기준		② 평	가결과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ļ-
) 건 기									
평가 결과									
	계					-			
	전기 · 전자제를 출합니다.	품의 재질·구	조개선지침」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리	가 재질	· 구조개선사항평가	-서
교 개	큰 됩니다.								
				년	월	일			
			하국저지	제출인 }산업진흥	-회장	귀하		(서명 또는 인	1)
· 〈작성	 요령〉			1666	10				
		·의 항을 기재							
②별3	포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	한 결과를 기] 재					
③개석	선이 필요한 /	사항을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환경부고시제2008-1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 정보제공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화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고시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8-7호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9호, 2007. 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관 세 청 장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 별표3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세관 성실신고자) ① 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중 수시북한방문자에 대하

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성실하 게 신고하는 자(이하 "세관 성실신고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 현지기업 등은 별지 제4호의 세관 성실신고 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표3의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수시북한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확인표의 위조·변조·양도·대여 금지
- 2. 현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또는 세관과 공동으로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홍보 및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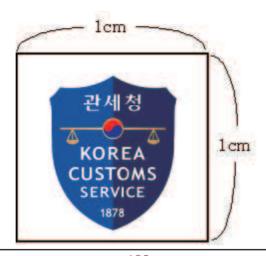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



〈 별지 저	세4호 스	식 〉											
			세관	성실신고자 >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_					5일					
	업체	·기관명											
		, 2 0	개성공	공업지구 현지	기업 🗆 ㅋ	반리기관 □	개발업자 🗆						
신청인	대표	포자명											
	3	주소											
	연	락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													
	자 지정]을 신청학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관장 귀하												
연번	성명	기선경 기 주민등		방문증번호	 주		소	연락처					
1	0 0	7 2 0		0 2 0 2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겨으	- 즈미드	로버ㅎ라	 -에 구저 및 q	너귀버ㅎ 기기	대하여 즈시	기 바랍니다.	<u> </u>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3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1993-5호(1993. 7. 1.)를 항공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 1.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2.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는 관할 시·도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가.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단위 : km²)

구분		변	경		전			변	경	ق	ř T		
十七	구	역	위		치	면 :	적	구 역	위		치	면	적
			제주시	용담동	일대	0.37	0		제주시	도두1동 '	일대	0.1	66
	제1층	종구역	제주시	도두동	일대	0.61	4	제1종구역	제주시	도두2동 '	일대	0.1	37
	(95WEC	PNL이상)		이호동	이미	0.109	10	(95WECPNL이상)	제주시	용담2동 '	일대	0.1	.33
				-13-0	근데		,,,		제주시	용담3동 역	일대	0.0	36
		1종	소계			1.09	3	1	종 소계			0.4	72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제주시	용담동	일대	0.30	7		제주시	도두1동 역	일대	0.1	49	
		제주시	도두동	일대	0.50	9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		도두2동 역	일대	0.1	07	
소음 피해		5WECPNL미만)	제주시 이호동 역	인대	일대 0.091	1		711 7 71	용담2동 역	일대	0.1	50	
지역			711 1 7 1	11-0	120 6 11				제주시	용담3동 역	일대	0.0	48
		2종	소계			0.90	7	2종 소계				0.4	54
			제주시	용담동	일대	0.86	9		제주시	이호1동 '	일대	0.05	1
	_		제주시	도두동	일대	1.03			제주시	이호2동 역	일대	0.07	4
	제3종구역 (80WECPNL°		제주시	이호동	일대	1.16	4	제3종구역 가지구 (85WECPNL이상	제주시	도두1동 '	일대	0.27	1
	90WECF		제주시	도평동	일대	0.18	9	90WECPNL미만)	제주시	도두2동 '	일대	0.14	4
			제주시	내도동	일대	0.62	3		제주시	용담2동 '	일대	0.25	4
				외도동	일대	0.56	8		제주시	용담3동 역	일대	0.18	2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让	구	역	위	치	면 적	구 역	위 치	면적	
							3종 가지구 소계	0.976	
							제주시 내도동 일대	0.162	
							제주시 도평동 일대	0.030	
							제주시 이호1동 일대	0.130	
					제3종구역 나지구	제주시 이호2동 일대	0.354		
						(80WECPNL이상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373	
						85WECPNL미만)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192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287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370	
				}			3종 나지구 소계	1.898	
			북제주군 일대		0.160		제주시 북제주군	0.275	
							하귀리 일대 제주시 외도1동 일대	1.118	
							제주시 내도동 일대	0.458	
							제주시 도평동 일대	0.114	
						제3종구역 다지구	제주시 이호1동 일대	0.389	
						(75WECPNL이상	제주시 이호2동 일대	0.469	
						80WECPNL미만)	제주시 도두1동 일대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278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374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501		
							3종 다지구 소계	4.386	
3종 결	 소계				4.603	3종 소계		7.260	
						03 전체 합계			

나.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 : 별첨(게재 생략)

⊙기술표주원고시제2008-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H6032	냉동 생선커틀릿		
제정	KSH6031	해물패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F 2104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
الحالم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1	골재의 충격시험 방법 (골재 생산공정관리용)	
	KS F 4202	콘크리트 널말뚝	

2. 개정 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격번호	7	격	명	주	ያ	내	용	-
	KS F 2104	강열감량법이 기물 함유			•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구	구격 변경에 ㄸ	누른 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 현	력비 (C) 방법	BR) 시		사용 및 인용구 -공판의 그림 <i>-</i>			
	KS F 2437	공명 진동에 의 동탄성 7	의한 콘	푸아송	•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7 동의 1차 공명	구격 변경에 때	ì른 개정	수정
개정	KS F 2456	급속 동결 년 크리트의 저				사용 및 인용구 성 계수 계산식			€⇒0)
	KS F 2561	철근 콘크리	믜트용 병	방청제	•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구	구격 변경에 때	부른 개정	
	KS F 2567	콘크리트	용 실리키	퓸	•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구	구격 변경에 때	누른 개정	
	KS F 2581	골재의 충격 생산공	시험 방 ¹ 정관리용		•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구	구격 변경에 ㄸ	누른 개정	
	KS F 4202	콘크리.	트 널말!			의 압축강도 수 의 종류 추가	치 및 단위 수	>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2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고
개정	KS	S M IS	O 109	88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규격안

2. 개정 사유

- ISO부합화 등급조정에 따른 KS규격 번호체계 수정(IDT→MOD)
-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ISO 10933 에서 "KS M 10933" 으로 규격번호 개정
 -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주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 02-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정 정

관보 제16673호(2008. 1.21.)에 게재된 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8-1호(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지정) 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중부지방산림청

○누락분 추가

등산로 현황및 관리등급

					,	0 / 2 0					
기 교	기 관 별			등 산		로	현	황		비	고
7 1	己	산이름	소	소 재 지		구	간	거리(km)	관리등급		1
중부지 산림청	방		15개소					86.9			
보은관	리소	속리산	충북 보은 근 산5-1	군 속리산민	년 대목리	대목리~천왕봉	-	2.4	А		
단양관	리소	수리봉	충북 단양	대강 방곡	산1-1	윗점-수리봉- 대흥사골	·황정산-	12.0	А		
단양관	리소	황정산	충북 단양 외 3	대강 직티	산29-1	빗재-황정산-1	대흥사골	10.6	А		
부여관	리소	고봉산	대전 동구	추동		A지구-죽말		2.7	A		

7]	관	н	산이름			등	산	로	현	황		비	고
	넌	글	겐이늄	소		재	지	구	간	거리(km)	관리등급	ы	14
				소계						27.7	A등급소계		
단영	냥관리	소	삼태산	충북	어상천	임현 신	52-1	본동-삼태신	<u>}</u>	6.2	В		
부c	여관리	소	희리산	충남	서천군	산천리	산 35-1	관리실-관리	실(순환)	9.8	В	휴잉	림
부c	겨관리	소	성흥산	충남	부여군	군사리	산 1-2	주차장-매점]	2.3	В	산림-	욕장
				소계						18.3	B등급소계		
충격	주관리	소	덕가산	충북	괴산 연	풍 주진		주진리 ->	쌍곡리	7.0	C		
충격	주관리	소	원통산	충북	음성 김	곡 사곡	-	사곡리 ->	월정리	4.0	C		
충리	주관리	니소	천등산	충북	충주 신	철 송강	-	다릿재->천 재	등산-〉느릅	1.5	С		
단영	냥관리	소	태화산	충북	단양 영	춘 오시	- 산1외 2	오사리-정상	·-오사리	8.0	С		
부c	여관리	소	일락산	충남	서산시	용현리	산 5	주차장-일릭	ት 산	6.3	С	휴잉	림
				소계						26.8	C등급소계		
단영	양관리	소	도솔봉	충북	단양 대	강 사동	- 산1	사동임도-1	102봉	2.9	D		
부c	여관리	소	오서산	충남	보령시	장현리	산 52	주차장-오셔	 산	5.2	D	휴잉	림
				소계						8.1	D등급소계		
단영	냥관리	소	금수산	충북	제천 수	산 능강	· 산1-1	정방사-얼음	골	6.0	E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대표 김선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 및 북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 지원 등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8년 1 월24일~2008년12월31일(사용기한 : 2009. 4.30.)

-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 5 모집예정액: 55억워
- 6. 모집방법 : 방송을 통한 모금, 계좌입금, ARS 등
-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8-8호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 존중 및 인터넷 정보환경에서의 도서관 이용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 및 보완하여, 휴관일 및 자료의 대출 제한규정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1) 도서관의 이용봉사
 -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봉사 조항을 신설함.
 - ○인터넷 정보환경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정보매체들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 보존해야 할 대상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
 - ○도서관자료 이용을 위한 이용증 발급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함.
 -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 2) 도서관 휴관일
 - '어린이날'은 공휴일로서 휴관하였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 토록함
 - 3) 저적권법 준수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원자료 보호 등을 위한 복제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유해정보 검색·열람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세분 규정함

4) 이용자 차별금지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을 삭제하고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로 고쳐 입관제한 대상을 일반화 함

5) 도서관 협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사업은 이미 운영을 중지한 사업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넓은 개념인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2 월18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제도개선팀장, 주소 : 110-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전화 : 3704-2731, FAX : 3704-2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8-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 면제근거 마련
- 나.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규정
- 다. 해저케이블 시설보호를 위한 경계구역 지정절차 마련

3 의겨제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울시종로구 세종로 20,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 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호

해양오염 방제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유흡착재 3종)을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해양경찰청장

- 1 언체명 : 케이애씨사언(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7 현대뉴스타빌딩 906호
- 3. 품 명 : 유흡착재
- 4. 형 식: 매트형(REZ-401, MAT 403), 붐형(BOM-304)
- 5. 형식승인번호 : 흡-73(1998. 11.24), 흡-74(1998.11.24), 흡-85(1999. 9. 6.)
- 6. 승인취소 요청사유 : 방제자재 · 약제 관련 업무 중단
- 7. 형식승인 취소일 : 2008년 1 월23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 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등록일
제 구-048호	(주)강산	시진덕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08.
제 구-048호	이앤씨	시선탁	172-11	동 1332-229	1.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82호선(평택~화성)

3. 사용개시구간

○개시구간 :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 71-5임~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100-11(L=14.24 km)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조암리·한각리·멸우리·주곡리

장안면 사곡리 · 금의리, 팔탄면 서근리 · 덕우리 · 덕천리 · 율암리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개시구간 :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5임~우정읍 멱우리 317-12도(4.4km)

7. 개시일시 : 2008년 1 월28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8-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서울체신청장

- 1.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5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67조
 -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등 처리규정(정보통신부훈령 제368호)
-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과(서울시 중구 반포로1(충무로1가 21번지) 🕿

02-6450-3442, 3448)

	행정처분대상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서재민(개인)	서울 강북구 ¤ (19/8)	기아3동	224-13호	광고 표시 의무위반	과태료처분	_					
2	천종욱(개인)	경기 성남시 2989-9번지(1/)		상대원동	광고 표시 의무위반	과태료저문	http://cafe.daum. net/phonechip					
3	윤문수(개인)	서울시 강동구 (15/5)	암사동	421-33	광고 표시 의무위반	과태료처분	_					
4	안세진(개인)	서울 강동구 (15/6)	고덕2동	187-1	광고성정보 게시위반	과태료처분	http://blog.naver.com/522643					
5	최은숙(개인)	서울시 관악구 (16/4)-103	봉천동	1621-17	광고 표시 의무위반	과태료처분	_					
6	김대식(개인)	서 울 시 강 791-2081(6/5)		미 아 동 가 A-10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99-6162					
7	미성상회 (김사옥)	서울시 금천구 (14/8)-201	가산동	151-19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7949					
8	김병호(개인)	인천시 연수구 (26/2)-B04	 ¹ 연수동	524-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www.ogames.co.kr					
9	김현정(개인)	서울시 영등포 (18/7) 지층	 구 신길	동 407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271-8493					
10	미래기획 (김천욱)	인천시 남구 숭.	 의동 12- 	39 (13/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6-0044					
11	미성상회 (김사옥)	서울시 금천구 (14/8)-201	 가산동	151-19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74#28					
12	(주) 산다 (김재영)	서울시 강서구 (7/4)	 방화동	575-2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6-5866					
13	(주) 산다 (김재영)	서울시 강서구 (7/4)	방화동	575-2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3-7676					
14	엄민호(개인)	서울시 노원구 중계그린(아) 11		03 (13/8)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9-3972					
15	박진현(개인)	서울시 동작구 (7/3)	 ¹ 사당동	5 202-9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66-4978					
16	오건택(개인)	경기도 하남시 (1/4)	 천현동	408-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6245-8540					
17	김만호(개인)	경기도 성남시 663-69 (23/)	중원-	구 은행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31-753-7001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8	(합)대성인테 리어(손주용)	서울시 용산구 (1/2)	서계동	220-3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44-2089
19	천미현(개인)	서울시 용산구 (13/4)	용산동2가	1-688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803-6755
20	김정화(개인)	경기도 안산시 990-1 (21/5)	단원구	선부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80-001-1064
21	미래기획 (김천욱)	인천시 남구 숭으	기동 12-39) (13/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5-6622
22	백기봉(개인)	경기도 부천시 71-5 (32/1)	오정구	여월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3210-0213
23	원준영(개인)	서울시 동작구 선 번지 (13/5) B02		344-98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6746-5479
24		경기도 고양시 203-29 (29/4)-		행신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2-1447
25	㈜ 레 더 글 로 리(원종연)	서울시 노원구 / (11/12) 토마토피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7476-3346
26	조헌복(개인)	경기도 시흥시 (7/5) 102호	정왕동 :	1431-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512-5135
27	김금란(개인)	경기도 구리시 (21/) 1층	수택동 4	454-3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www.race8282.com
28	윤미애(개인)	서울시 관악구 번지 (15/4)	신림13동	711-53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0-1751
29	김형배(개인)	서울시 동작구 (2/6)	노량진동	249-36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6293-5646
30	김영수(개인)	경기도 안양시 981-35번지 (4/		호계1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7213-6697
31	김흥주(개인)	서울시 동대문구 (5/1)	용두동	238-78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60-2076
32	예진통신(유) (김선아)	경기도 김포시 (7/1)-101	북변동	174-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5-5603
33	준(정효준)	서울시 중랑구 (16/4)	면목동	182-9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909-5499
34	김정화(개인)	경기도 안산시 990-1 (21/5)	단원구	선부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901-8888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35	(합)대성인테 리어(손주용)	서울시 용산구 (1/2)	서계동	220-3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44-2108
36	김정화(개인)	경기도 안산시 990-1 (21/5)	단원구	선부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80-875-4521
37	박호연(개인)	경기도 부천시 189-169 (12/7)	원미구	원미2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4-5912
38	(주)명진엘엠 (최상훈)	경기도 안산시 527-9 (49/2) 중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72-0506
39	이현순(개인)	서울시 광진구 (15/4) 부광빌라-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149-3624
40	김왕주(개인)	인천시 계양구 임 삼성파크빌-B02	학동 69-	-4(53/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66-9869
41	차윤정(개인)	서울시 성동구 성 (34/2)	성수동2가	328-76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7794-0427
42	태평유통 (유구성)	서울시 중구 님 (11/7)	대문로5	가 62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146-5136
43	원창환(개인)	경기도 파주시 (12/1) A-201	맥금동 4	483-2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797-8292
44	김재완(개인)	경기도 시흥시 (40/2) 1층	신천동	877-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672-8850
45	김덕호(개인)	서울시 성북구 (5/5)	보문동77	} 24-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939-0048
46	씨에스(CS) 모바일 (유은철)	경기도 광명시 (15/2) 선영빌라-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605-5749
47	남명희(개인)	서울시 광진구 지 (5/2)-202	가양동 59	7-7번지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95-8548
48	김영호(개인)	경기도 용인시 564-3 (1/5)	처인구	역북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www.nara999.com
49	윤창 용 (개인)	서울시 송파구 (19/4)-B01	가락동	144-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822-3854
50	정광영(개인)	인천시 강화군 선 (7/)	년 원면 신경	청리 34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60-805-6313
51	이창학(개인)	서울시 영등포구 (21/3) 2층	양평동57	} 120−3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502-448-1223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52	(유)미래의류 총판(공유식)	경기도 시흥시 (12/6)-203	정왕동	1187-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71-9501
53	장성환(개인)	경기도 인천시 545-5번지 (11/		연수1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1-9248
54	박병민(개인)	경기도 성남시 수 (26/)	·정구 신흥	동 150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2-4190
55	강인수(개인)	서울시 구로구 (8/1)	오류동	221-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71-1564
56	박이금(개인)	인천시 부평구 부 대림아파트 3-90		20 (18/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19-1193
57	조용남(개인)	서울시 강서구 (13/6)	화곡동	366-2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44-1515
58	임윤빈(개인)	서울시 종로구 (4/1)	부암동	333-6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644-0790
59	전남수(개인)	인천시 연수구 (44/4)-204	연수동	487-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www.redbada.com
60	김덕수(개인)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408	-2 (1/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6419-9402
61	김종화(개인)	서울시 영등포 (22/1) 목화아파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280-5353
62	006대리운전 (김동환)	서울시 마포구 상	수동 136-	-1 (30/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600-9060
63	유효남(개인)	서울시 중랑구 「 지 (15/7)	면목7동 6	23-18번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9493-5073
64	백승호(개인)	인천시 남구 용현	년동 491-	35 (5/3)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566-2775
65	심효섭(개인)	경기도 의정부/ (4/3) 상선약수빝		705-2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600-5064
66	추성립(개인)	경기도 인천시 1005 주공아파트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644-9913
67	빌몬(정동균)	서울시 성북구 (5/7)	정릉동	759-1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80-885-0032
68	윤경희(개인)	서울시 송파구 선 (17/3) 그린빌라		3-10번지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822-3374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69	김재완(개인)	경기도 (40/2)		신천동	877-4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581-8546
70	조재문(개인)		안산시 딘 다세대주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2058-1792
71	이동훈(개인)	서울시 (13/4)-		봉천동	1679-6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506-998-2236
72	신형철(개인)	서울시 지 (16/		면목2동 1	82-92번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495-8484
73	최관수(개인)	서울시 (13/4)-		봉천동 1	615-20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7194-2411
74	(유)유영스케 치(이동훈)	서울시 (13/4)-		봉천동	1679-6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799-9189
75	최종열(개인)	서울시 (20/8)	영등포구	구 도림동	245-6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547-0534
76	김영일(개인)	서울시 (5/8)	송파구	방이동	163-10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2-572-6656
77	정석환(개인)	경기도 (24/3)	안산시 단	난원구 와등	₹ 730-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88-9153
78	장선우(개인)	경기도	광주시 역	부동 1−12	8 (17/)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762-0534
79	장대봉(개인)		인천시 남등 전주택 40		동 437-10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449
80	이권일(개인)			봉천동 } 1층-10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8672-7691
81	박진정(개인)		강서구 : 트림빌 10		362-119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6481-3124
82	이현금(개인)		강동구 길 타텔-601	길동 386-	8 (24/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1644-5031
83	김유화(개인)	경기도 434-16		상록구	월피동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319-2786
84	유재성(개인)	경기도 - (1/3)-3		시구 풍덕천	l동 69-81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505-393-0523
85	박종환(개인)	경기도 (14/4)	안산시 싱	목구 일동	- 595-15	사 전 수 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9449-7622

●기술표주원공고제2008-1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숙표주워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안국밸브 (안병무)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381 (031-366-5757)	플랜지식 산업용 SMC 볼 밸브 (가스용 제외, 사용압력 : 0.98 MPu, 호칭지름 : 150mm이하)	NEP- MOCIE- 2008-001	2008.1.28~ 2011.1.27
우창그레이팅 (오웅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 면 송천리 360 (031-593-5550)	ロ자 구조의 그레이팅 [항공, 항 만, 물류기지등(DB-18 이상)]	NEP- MOCIE- 2008-002	2008.1.28~ 2011.1.27
㈜에이치케이밸브 (윤일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6 (3블록 -12롯트) (031-495-9511)	해수용 폴리우레탄 버터플라이 밸브(압력 1.57MPa 이 하, 구경 2000mm 이하)	NEP-1761 (KT)	2008.1.28~ 2011.1.27
삼현전자통신㈜ (김정수)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76-3 대준빌딩 3층 (031-455-6061)	서지카운터를 내장한 서지차 단 분전반 (부하전원 제어용 220/30A.50A)	NEP-2004- 079(EM)	2008.1.28~ 2011.1.27

신제품(NEP) 인증 취소 업체

업 체 명	인증취소 제품명	취소 인증번호	취소사유	취소일
㈜탑시스템	전동차용 열,연기 실시간 측정 방식의 자동 화재 감지시스템	NEP-2006-133(EM)	폐업	2008.1.2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1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규 정
행정처분 인	법체현황 : 총 42	1개 업체	(영업정지6월 37, 영	령업정지3월	<u>월</u> 2, 영업정	지1월 2)	
경기-주택 2000-0079	청원종합건설(주)	정용성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0-1 현대 프라자 4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1-0120	미림씨엠이(주)	조규택	경기 성남시 분당 구 금곡동 210 코 오롱트리폴리스 C 동 240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280	(주)기영개발	신영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973 연안 빌딩 60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6-0121	(주)드림아이앤 씨	한정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평촌아 크로팰리스 1308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대지 2005-0132	우상공영(주)	이수호	경기 평택시 합정동 929-14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 실,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2-0077	가람건설(주)	박제건	경기 광명시 하안동 61-1 조일프라자빌 딩903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0-0099	기안건업(주)	김종대	경기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 타워 215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1982-0001	(주)한일건설	김철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420-26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110	디와이건설(주)	김교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3-14 부강빌딩 3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178	(주)풍기종합건 설	이은백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62-9 새 롬프라자 5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153	(주)알앤씨개발	최상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3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4-0040	아키원종합건 설(주)	최종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4-2 골드 존타워 703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규 정
경기-주택 2003-0104	(주)신천종합건 설	최무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7 신풍 프라자 504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1999-0092		조영대 오명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344-1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277	세움씨앤씨	신동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2 3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164	(주)쉐르진	오해곤	경기 성남시 수정 구 신흥동 948 3층 30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1999-0012	(주)대맥	김채형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95 광교프 라자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033	(주)경천씨앤씨	안효종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1 수 원미디어시티 201 호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1-0102	남양주택건설 (주)	박옥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309	(주)신보종합개 발	두금옥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98 국화빌딩 5층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4-0164	(주)성은종합건 설	김선아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59-20 청한빌딩 4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001	신성토건(주)	심양모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04-4 50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4-0061	한이건설(주)	신성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6 평 촌라츠오피스텔 1815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057	우주산업개발 (주)	손중호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2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규 정
경기-주택 2003-0076	평산건설(주)	박향영	경기 용인시 김량장 동 296-55 2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134	디비알건설(주)	류정선	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리 231 102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대 2005-0127	광장종합건설 (주)	류찬숙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428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081	(주)정석이앤씨	박종수	경기 광명시 광명5 동 290-14 5층 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6-0058	(주)세종디아이	원종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1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122	기산투자개발 (주)	이훈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22-9 부흥빌딩 3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2-0187	'	김중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 메트로칸 113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052	(주)청석제이앤 에스	최원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9 백운 빌딩 503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대 2002-0075	세성종합건설	박정순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97-1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5-0067	(주)에이비씨앤 디	구자실	경기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1805-1 타 워씨티 8층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142	(주)성문산업개 발	엄재성	경기 용인시 상현동 30-1 성원2차 상가 1층 115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1-0112	대현산업개발 (주)	최효섭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1082-9 서초빌딩 701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규 정
경기-주택 2004-0076	인탑	박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55-1 풍림 아이원플러스 A동 1809호	6개월 영 업정지	'08.1.29 ~ '08.7.28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1997-0011	창조건설㈜ (변경전 우정 건설)	김진일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182 대맥빌딩 203호	3개월 영업정지	'08.1.29 ~ '08.4.28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3-0288	엠지코리아(주)	정성재	경기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94-2 2층	3개월 영업정지	'08.1.29 ~ '08.4.28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02-0138	가자건설정보 (주)	최순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 양윤 빌딩 4층	1개월 영업정지	'08.1.29 ~ '08.2.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 11조, 제14조 제1 항
경기-주택 2003-0096	(주)아이.디.씨	안세영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동양 텍스빌상가 315호	1개월 영업정지	'08.1.29 ~ '08.2.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 11조, 제14조 제1 항

⊙대구광역시공고제2008-4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동방화경플랜트

2. 대표자 : 박무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06번지(☎053-522-0757)

4.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제51호), 수질(제54호)방지시설업

5. 등록일자 : 2008년 1월23일

⊙경상남도공고제2008-7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경상남도지사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장호종합건설 (110111-1073230)

2. 대표자 : 김철구(380713-******)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33-12 클라시스상가 601호(☎055-646-0666)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 수직-68호

6. 등록일자 : 2008년 1 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69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업소명 : 청호환경건설(주)

2. 대표자 : 이정언

3. 영업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67-10

4. 전화번호 : (064) 726-5644

5.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주-제10호

6. 등록일자 : 2008년 1 월22일

기 타

0공 고

-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 월2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피환 부인	압	수	물	건
2008-	2008-	장효환외	특수절!	도드	불상	증1호	49씨씨 대림 마조르 오토바이 (환가대금 20,000원)		1대
31	5	3명	7 1 2-	- 0	20	증2호	49씨씨 대림 택트 오토바이 (환가대금 20,000원)		1대